

## 1918년 독감과 조선총독부 방역정책

김택중\*

### [초 록]

일명 스페인 독감이라 불리는 1918년 독감 범유행은 단일 원인으로 발생한 20세기 최악의 인구학적 재난이었다. 이 독감은 제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이던 1918년 봄에 발생하여 1919년 봄까지 전 세계로 퍼져 나가 적게는 2,000만 명, 많게는 1억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역학적으로는 해당 기간 동안 크게 세 차례의 만연이 있었다. 식민지조선에서 1918년 독감 유행이 처음 인지된 시기는 2차 만연 시기였던 1918년 9월경이었다. 독감은 남만주철도를 타고 한반도 북부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19년 3월 조선총독부가 공식 집계한 결과 독감 유행으로 식민지조선의 1918년도 추정 인구 17,057,032명 중 7,556,69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140,527명이 사망하여 사망률은 0.82%였다. 그러나 실제 이환자와 사망자의 총수는 이보다 더

---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이학교실 조교수, 인제대학교 인문의학연구소 소장

주제어: 1918년 독감 범유행, 스페인 독감, 인플루엔자,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방역정책, 검역  
1918 Influenza Pandemic, Spanish Flu, Influenza,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pidemics, Quarantine

많았을 개연성이 높다. 1918년 당시 조선총독부 방역정책은 경무총감부를 중심으로 한 헌병경찰의 무단성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는 독감의 원인이 규명되기 훨씬 이전이었던 탓에 독감은 법적인 규제 밖에 놓여 있었고 효과적인 방역 역시 가능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무총감부는 헌병경찰의 호구조사를 통해 이환자와 사망자를 집계하는 데 급급했을 뿐 독감 유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조선총독부의 독감 방역 실패로 일상적인 죽음을 목격하게 된 한국인들은 무단정치 10년의 절망감을 분노로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 1. 들어가는 말

바이러스 또는 세균이 사람의 호흡기를 감염시켜 발병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은 지금도 여전히 만병의 으뜸이라 여겨질 만큼 많은 사망자를 낳는다.<sup>1)</sup> 가령 개발도상국에서는 매년 400만 명 이상의 소아가 호흡기 감염 증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그 추정 원인으로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들을 꼽는다.<sup>2)</sup> 흔히 독감으로 알려져 있는 인플루엔자 역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병하는 대표적인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서 일반 감기와 달리 전 세계적으로 매년 25만-5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다.<sup>3)</sup> 이러한 까닭에 디스토피아나 종말을 다룬 소설과 영화에서 변종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중증 호흡기 질환의 세계적 유행은 인류 멸망의 유력한 원인으로 곧잘 등장한다. 20세기 들어 실제로 그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이던 1918년부터 1919년까지 2년간 전 세계에 퍼져 적게는 2,000만 명, 많게는 1억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알려진 이

1) 슈테판 카우프만(2008), 최강석 역, 『전염병의 위협, 두려워만 할 일인가』, 서울: 길, 2012, pp. 118-119.

2) 대한감염학회(2014), 『감염학』, 개정판, 서울: 군자출판사, p. 817.

3) 이는 온대지방에서 해마다 겨울철에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계절 독감에 의한 결과이다. WHO (2011),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p. 36.

르바 ‘스페인 독감 범유행’(Spanish influenza pandemic)<sup>4)</sup>이 그것이다.

1918년 독감처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가 대변이를 일으켜 비 주기적으로 세계적인 대유행을 유발하는 범유행 독감(pandemic influenza)은 겨울철마다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일반적인 계절 독감(seasonal influenza)과 달리 그 치명률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로 범유행 독감은 1918년 이후 지금까지 1957년, 1968년, 2009년 등 3차례 더 유행하면서 수많은 사망자를 낳았지만 1918년 독감 수준의 파괴성을 넘어서지는 못했다.<sup>5)</sup> 거의 1세기 전 사건으로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진 1918년 독감이 한국 사회에서 다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2003년부터 국내에도 유행하기 시작한 고병원성 조류 독감<sup>6)</sup>과 더불어 21세기 들어 첫 범유행

- 4) 1918년 발생한 속칭 스페인 독감(Spanish flu)은 여러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사료의 직접 인용을 제외하면 모두 ‘1918년 독감’으로 통일하였다. 1918년 독감이 스페인 독감이라 불린 이유는 사람들이 스페인을 독감 유행이 처음 시작된 지역 또는 유행이 매우 심한 지역으로 오해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중립국이었던 스페인이 유럽의 다른 교전국들과 달리 언론 통제를 하지 않아 자국 내 독감 유행 사실이 검열 없이 보도된 데에서 비롯하였다.
- 5) WHO (2011)는 1918년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범유행 독감으로 이 3차례의 유행을 꼽는다. 그리고 각각의 추정 사망자 수는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57년 중국 남부에서 시작하여 1958년까지 이어진 아시아 독감 (Asian flu, A/H2N2)으로 100만-400만 명이 사망했고, 1968년 역시 중국 남부에서 시작하여 1969년까지 이어진 홍콩 독감(Hong Kong flu, A/H3N2)으로 70만-400만 명이 사망하였다. 2009년 멕시코에서 시작하여 2010년까지 이어진 이른바 신종 플루 (A/H1N1 2009pdm)로는 28만 4천여 명(실험실 검사를 통해 독감에 의한 사망이 확인된 18,500명 포함)이 사망하였다. Yu-Chia Hsieh *et al.* (2006), p. 1; WHO (2011), pp. 37-51; Fatimah S. Dawood *et al.* (2012), p. 687; 대한감염학회(2014), pp. 837-838.
- 6) 조류 독감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조류를 감염시켜 발생하며 동물 범유행병 (panzootic)을 초래하기도 한다. 고병원성 바이러스(A/H5N1 HPAI)인 경우에는 드물게 조류에서 사람으로 바로 전파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람 감염의 예는 1997년 홍콩에서 처음 발생하였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사람 감염이 보고되지 않았고 주로 가금류 간의 감염을 통한 고병원성 바이러스 유행이 2003-2004년, 2006-2007년, 2008년, 2010-2011년, 2014-2015년에 걸쳐 다섯 차례 있었다. 대한감염학회(2014), pp. 838-839; 『동물전염병 한반도 습격... 최선의 대책은 - 되살아나는 ‘조류인플루엔자 악몽’』, 『서울신문』, 2010년 12월 9일, p. 6; 『한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청정국 지위 회복』, 『중앙일보』, 2016년 8월 17일, 중앙일보 웹페이지, <http://news.joins.com/article/20464323>.

독감으로 기록된 2009년의 이른바 ‘신종 플루’에서 기인한다. 이 가운데 특히 2009년 독감은 원인 바이러스의 아형(A/H1N1)이 1918년 독감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람들에게 역사적 사실에서 비롯된 공포심과 더불어 종말론적 상상력을 부채질하였다. 다행히 이듬해인 2010년, 우려했던 바와 다르게 계절 독감 수준의 사망자를 낳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2009년 독감이 한국 사회 각 분야에 남긴 파장은 적지 않았다.

역사학계의 경우 1918년 독감에 관한 앨프리드 크로스비(Alfred W. Crosby)의 고전적 논저가 2010년에 바로 번역·출간되었다.<sup>7)</sup> 그리고 그 역자에 의해 1918년 독감이 미국 사회에 끼친 각종 영향에 관한 일련의 논문들이 나왔다.<sup>8)</sup> 그러나 역사학계를 포함한 학계의 관련 연구 가운데 정작 언론과 인터넷 등 대중의 관심을 끈 것은 1918년 독감이 지닌 파괴력, 즉 독감 유행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에 따른 당대 한국 사회의 혼란과 파국적 상황을 강조한 것들이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정은의 1990년 논문이다.<sup>9)</sup> 이는 일제식민지시기 『매일신보』(每日申報)의 기사들과 『조선총독부통계연보』(朝鮮總督府統計年報)<sup>10)</sup>에 실린 데이터를 중심으로 1918년 독감의 참화를 3·1 운동 직전의 혼란스러웠던 사회상과 연결하여 재조명함으로써 1918년 독감을 1919년 3·1 운동 발생의 여러 요인 중 하나로 본 입론적 성격의 연구이다. 같은 시기 언론에서 이정은의 연구와 함께 종종 언급된 것이 1919년 당시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세균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캐나다 선교사 프랭크 스코필드(Frank W. Schofield)의 1918년 독감에 대한 공동 연구 논문이다.<sup>11)</sup> 1919년 미국의

7) 앨프리드 W. 크로스비(2003), 김서형 역, 『인류 최대의 재앙, 1918년 인플루엔자』, 파주: 서해문집, 2010. 원서의 초판은 1976년에 출간되었으며 이 번역서는 2003년 케임브리지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한 2판을 번역한 것이다.

8) 김서형(2010a); 김서형(2010b); 김서형(2011a); 김서형(2011b).

9) 이정은(1990), 『《매일신보》에 나타난 3·1 운동 직전의 사회상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0) 이하 필요시 『통계연보』로 표기.

사협회지에 실렸던 이 증례 보고 중심의 의학 논문은 당시 독감 유행으로 인한 한국의 피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자료이다. 이 논문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진전시킨 연구가 2007년 천명선과 양일석에 의해 이루어졌다.<sup>12)</sup> 그리고 같은 해 이정은의 입론적 연구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 연구가 박상표에 의해 이루어졌다.<sup>13)</sup> 그러나 박상표의 연구는 이정은의 것과 유사하게 『매일신보』의 관련 기사들을 중심으로 당대 사회상을 묘사하는 데에 머물렀다는 방법론적 한계를 안고 있다. 선행 연구들이 이처럼 『매일신보』 기사 분석에 집중되는 이유는 이 신문이 조선총독부 기관지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언론통제 정책이 시행되었던 1910년대 한국 사정을 통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또 지금도 수월하게 접근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한글 1차 자료이기 때문일 것이다.<sup>14)</sup>

이후 1918년 독감을 주제로 한 조금 더 전문적인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통계학적 방법론을 『통계연보』의 데이터에 적용하여 1918년 독감의 한국 내 발생률과 사망률 등을 재분석한 이상원의 2009년 연구, 기존 연구들이 참고하지 않았던 조선총독부와 경무총감부 발간 자료들을 활용하여 1918년 당시 한국의 독감 유행 상황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임채성의 2011년 연구, 그리고 1918년 독감 범유행을 소재로 삼은 당대의 한국 문학 작품들을 분석한 서희원의 2014년 연구 등이 그것이다.<sup>15)</sup> 이 가운데

- 
- 11) Frank W. Schofield & H. C. Cynn (1919), "Pandemic influenza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its etiology",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72(14); 스코필드의 의료선교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만열(2011), 『스코필드의 의료(교육)·사회선교와 3.1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57, 한국근현대사학회.
- 12) 천명선, 양일석(2007), 「1918년 한국 내 인플루엔자 유행의 양상과 연구 현황: 스코필드 박사의 논문을 중심으로」, 『의사학』 16(2), 대한의사학회.
- 13) 박상표(2007), 「21세기 조류독감 대재앙은 기우일까, 현실일까? - 『매일신보』를 통해 본 1918년 식민지조선의 ‘돌림고삐’ 유행」, 『인물과 사상』 108, 인물과사상사.
- 14) 무단정치기 식민지조선의 언론통제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연(2013), 『일제강점기 조선언론 통제사』, 서울: 박영사, pp. 151-159.

이상원의 연구는 향후 신종 독감이 범유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내 피해 규모를 예측하고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세우는 데 주안점을 둔 의학논문 이어서 1918년 독감에 대한 분석은 이를 위한 배경으로 기능할 뿐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즉, 활용한 사료 자체에 대한 검증 및 다른 사료들과의 비교 분석을 결하고 있다. 반대로 역사학논문인 임채성의 연구는 1918년 독감 범유행의 역학적 특징에 대한 기본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어 의학 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진다.<sup>16)</sup> 또한 조선총독부와 경무총감부 자료들을 인용하거나 서술할 때에도 현상적인 설명이 주를 차지하고 있어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국내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제 식민지 배자들이 남긴 1차 자료 가운데 접근 가능한 것들 중심으로 면밀히 대조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우선 1918년 독감에 의해 발생한 한국의 공식적인 이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사료적으로 확정하고자 한다. 서구에서는 1918년 독감으로 인한 인명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며, 이때 사료적 뒷받침이 필수임은 말할 것도 없다. 범유행

15) 이상원(2009), 『우리나라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예측 모델링 및 1918년 대유행에 대한 적용과 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Chaisung Lim (2011), “The pandemic of the Spanish influenza in colonial Korea,” *Korea Journal* 51(4),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서희원(2014), 『1918년 인플루엔자의 대재앙과 문학』, 『한국문학연구』 47,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6) 1918년 독감은 1918년 봄부터 1919년 봄까지 약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역학적으로 크게 세 차례 만연(wave)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필자는 식민지조선의 독감 유행 역시 대체로 그러한 양상을 따랐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임채성은 필자와 동일한 조선총독부 자료들을 활용하면서도 1918년 독감의 범유행 기간을 1918년부터 1921년까지로 지나치게 확대하였고, 그 결과 식민지조선에서 독감 1차 유행(epidemic)이 1918년 10월, 2차 유행이 1919년 11월, 3차 유행이 1920년 10월에 각각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1919년 겨울과 1920년 겨울의 독감 유행을 전부 1918년 독감, 곧 스페인 독감 범유행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존 연구 결과들에 비추어 무리가 뒤따른다. 1918년 독감의 역학적 특징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는 본 논문 2.1을 참조.

병에 따른 인명 피해의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은 당대 및 이후의 역사에 끼친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국내 선행 연구 가운데는 천명선과 양일석이 처음으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시도를 하였으나 이정은의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매일신보』와 『통계연보』 이상으로 사료적 확장을 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은 이상원의 연구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임채성의 연구는 이를 극복하고 사료적 확장에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범유행병으로서 1918년 독감이 가지는 전 세계적인 역학적 특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이환자 및 사망자 수 확정에까지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18년 독감은 식민지조선에 국한한 풍토병이나 동아시아에 국한한 유행병이 아닌 범유행병이었으므로 전 세계적인 조망 속에서만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18년 독감의 인명 피해 규모를 지구 단위와 한반도 단위로 각각 구분하여 파악해 보고자 한다.

식민지조선의 인명 피해 규모를 사료적으로 확정한 후에는 1918년 독감 범유행에 대한 조선총독부 방역정책의 실재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넘어가기로 한다. 헌병경찰제도를 중심으로 한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무단정치와 그에 입각한 방역정책에 대한 기본 연구는 2000년대 초 박윤재에 의해 완성되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 열개가 유효하다.<sup>17)</sup> 박윤재의 연구는 경무총감부를 정점으로 한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방역정책이 식민지조선인들의 반발감을 심화시켜 3·1 운동과 같은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한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을 만큼 억압적이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10년대에 접어들어 박윤재와는 다른 각도에서 경무총감부의 방역체계에 접근하려는 연구들이 등

17) 박윤재(2004), 『한말 일제 초 방역법규의 반포와 방역체계의 형성』, 『한국 근대의 학의 탄생과 국가』(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편), 서울: 역사공간, 2016, pp. 224-246; 박윤재(2005), 『위생경찰제도의 확립과 대민 지배』,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서울: 해안, pp. 330-372.

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박윤재 연구의 보완적 성격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이는 페스트나 콜레라 유행과 같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1910년대 경무총감부의 방역정책에 접근하여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같은 시기의 다른 연구들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sup>19)</sup> 본 연구에서는 무단정치 말기인 1918년 식민지조선을 엄습한 독감의 사례를 통해 경무총감부의 기존 방역정책이 어떻게 작동하였고, 또 페스트나 콜레라 같은 세균성 감염병에 맞추어져 있던 이 방역체계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인 독감에 의해 어떻게 무력화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1918년 독감 방역의 실패가 이후 일제의 방역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1918년 독감이 식민지조선에 끼친 인명 피해의 규모

### 2.1. 세계적인 인명 피해의 규모

1918년 독감으로 사망한 전 세계 인구 규모에 관한 서구 학자들의 연구는 일찍이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통계 결과는 1927년 미국에서 나온 것으로 1918년 독감으로 인한 전 세계 총 사망자 수를 2,160만여 명으로 추정하였다.<sup>20)</sup> 보수적인

18) 정근식(2011), 「식민지 위생경찰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유산」, 『사회와 역사』 90, 한국사회사학회; 이형식(2012), 「1910년대 식민지제국일본의 전염병 방역대책: 조선전염병예방령을 중심으로」, 『日本學報』 92, 한국일본학회.

19) 백선례(2011), 「1919·20년 식민지 조선의 콜레라 방역활동 - 방역당국과 조선인의 대응을 중심으로」, 『史學研究』 101, 한국사학회; 신규환(2012), 「제1·2차 만주 페페스트의 유행과 일제의 방역정책(1910-1921)」, 『의사학』 21(3), 대한의사학회; 김영수(2015), 「일본의 방역경험 축적을 통해 본 조선총독부의 방역사업: 1911년 페스트 유행 대응을 중심으로」, 『翰林日本學』 26,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 K. David Patterson & Gerald F. Pyle (1991), "The geography and mortality of the

통계를 선호하는 의학이나 미생물학 관련 교과서들은 대체로 지금도 여전히 이 수치, 즉 ‘2,000만 명 이상’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독감을 유발하는 원인 바이러스가 규명되기 이전이었던 당대의 진단 오류, 기록 누락과 같은 통계상 변수에 대한 고려와 함께 세계 각 지역별 연구 결과들의 누적으로 관련 연구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총 사망자 수를 점점 높게 잡아가는 추세이다. 그 결과, 1991년 연구<sup>21)</sup>에서는 총 사망자가 3,000만 여 명으로 증가하였고 2002년 연구<sup>22)</sup>에서는 5,000만-1억 명으로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연구자들은 가장 최근의 이 두 연구가 제시한 결과 범위 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취사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23)</sup>

다만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1918년 독감으로 죽은 정확한 총 사망자 수를 집계해 낸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리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1918년 독감이 단일 원인에 의해 발생한 20세기 최악의 인구학적 재난이었다는 것이다. 설사 1991년 연구에 의거하여 총 사망자 수를 3,000만 명으로 낮추어 잡는다고 해도 이는 1918년 당시 세계 추정 인구 18억 명의 1/60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이다. 더욱이 사망자 대부분이 1918년 8월부터 불과 6개월간 이

---

1918 influenza pandemic”,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65(1), p. 5에서 재인용. 원 출처는 Edwin Oakes Jordan (1927), *Epidemic Influenza: A Survey*, Chicago: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 21) K. David Patterson & Gerald F. Pyle (1991).
- 22) Niall P.A.S. Johnson & Juergen Mueller (2002), “Updating the Accounts: Global Mortality of the 1918-1920 ‘Spanish’ Influenza Pandemic”,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76(1).
- 23) 앨프리드 크로스비(2003)와 Howard Phillips & David Killingray (2003)는 1991년 연구에 의거 3,000만 명으로(p. 7; p. 4), John M. Barry (2002)는 2002년 연구에 의거 5,000만-1억 명으로 추정한다(p. 452). WHO (2011)는 기존 연구 결과 모두를 취하여 2,000만-5,000만 명으로(p. 37), Jeffery K. Taubenberger & David M. Morens (2006)와 Yu-Chia Hsieh *et al.* (2006) 같은 의학자들은 하한선을 높게 잡아 4,000만-5,000만 명으로 추정한다.

어진 2차 만연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정확한 총 사망자 수를 집계하기 어려운 이유도 이처럼 짧은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망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시체들이 수일간 매장되지 못한 채 방치되었고, 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관이 부족하여 사망자들을 집단으로 매장해야 했다. 따라서 다른 사건들, 가령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만 4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900-1,000만 명의 전사자를 낳은 제1차 세계대전이나 1981년 첫 발견 이래 현재(2015년 기준)까지 30여년간 3,500만 명의 사망자를 낳은 AIDS의 예와 비교해 보면 1918년 독감이 단기간 내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낳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연구자들이 1918년 독감을 14세기 중반 아시아와 유럽을 황폐화시킨 흑사병 이래 가장 파괴적인 역병으로 평가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sup>24)</sup>

이미 잘 알려진 대로 1918년 독감의 역학적 특징은 1918년 봄부터 1919년 봄까지 1년도 채 못 된 짧은 기간 동안 크게 세 차례의 만연(wave)이 있었다는 것이다.<sup>25)</sup> 1차 만연이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디인지는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1918년 초 미국 중서부에서 시작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sup>26)</sup> 미국에서 시작된 1차 만연은 전쟁 중인 유럽으

24) K. David Patterson & Gerald F. Pyle (1991), pp. 19-21; Howard Phillips & David Killingray (2003), pp. 3-4, p. 9, p. 132; John M. Barry (2005), p. 452; <http://www.unaids.org/en/resources/fact-sheet>.

25)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은 1918년 독감 범유행 기간 동안 발생한 3차례의 만연을 흔히 ‘three waves’로 표현한다. 그런데 이 ‘wave’는 보통 ‘유행’으로 번역하는 ‘epidemic’보다 하위 개념이어서 ‘유행’과는 구별되는 다른 번역어가 필요하다. 엘프리드 크로스비의 저서를 번역한 김서형의 경우 ‘wave’의 번역어로서 ‘국면’을 선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만연’을 선택하였으며, first wave, second wave, third wave를 각각 1차 만연, 2차 만연, 3차 만연으로 번역하였다.

26) 많은 연구들이 1918년 독감 유행의 진원지로서 미국을 꼽는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 가령 J. S. Oxford *et al.* (2005)은 1917년 겨울의 프랑스 북부를, Christopher Langford (2005)는 중국을 지목한다. 이러한 혼란상으로 인해 Jeffery K. Taubenberger & David M. Morens (2006)은 사료와 역학 데이터로 1918년 독감

로 빠르게 전파되었고, 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 이어 7월에 이르면 호주까지 확산되었다가 8월에 그 기세가 약화되었다. 그러나 8월 말 곧바로 더 치명적인 2차 만연이 시작되었다. 2차 만연 역시 1차와 마찬가지로 어디서 처음 시작되었는지 분명치 않으나 전장이던 서부 유럽, 아마도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치명률이 낮았던 1차 만연과 달리 2차 만연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로 독력이 강화되고 세균성 폐렴을 잘 동반하였으므로 대부분의 희생자가 이때 나왔다. 그리고 호흡기 감염의 특성상 대규모 군대와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는 증기선이나 철도 같은 교통망을 따라 급속히 확산되어 1918년 겨울과 1919년 봄에 이르면 독감은 일부 고립된 섬과 외딴 지역을 제외하고 사실상 인간이 거주하는 세계 모든 곳으로 퍼졌다. 1919년 초에 다시 3차 만연이 시작되었으나 이는 2차 만연보다 덜 치명적이었고 그 전파 규모도 이전과 비교하여 불분명한 것이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1920년에도 독감이 지속되거나 또는 다시 만연하는 것 같은 양상을 보였는데, 이를 1918년 독감 범유행의 4차 만연으로 보아야 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sup>27)</sup>

## 2.2. 식민지조선 내 인명 피해의 규모

1918-1919년 당시 유행감기, 유행독감, 악성감모, 서반아감기 등 다양한 명칭<sup>28)</sup>으로 불렸던 1918년 독감의 2차 만연이 식민지조선에서 시작

---

바이러스의 지리적 기원을 확인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27) 이상의 내용은 관련한 최근의 연구 중 역사학 분야는 Niall P.A.S. Johnson & Juergen Mueller (2002)와 Howard Phillips & David Killingray eds. (2003)을, 의학 분야는 Jeffery K. Taubenberger & David M. Morens (2006)을 참고하여 절충한 것이다. 이 가운데 Howard Phillips & David Killingray eds. (2003)은 1918년 독감을 주제로 1998년 9월 케이프타운대학교에서 개최한 사상 최초의 국제 컨퍼런스에 발표되었던 논문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편집한 책이다.

28) 『毎日申報』 1919년 2월 13일자 3면을 보면 동일한 질병을 두고 惡性感冒, 류형독

된 시기는 프랭크 스코필드의 언급대로 1918년 9월로 추정된다. 물론 1918년 3월부터 시작된 1차 만연이 이미 식민지조선을 덮쳤을 것이나 『매일신보』에 유행 사실이 기사화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치명률이 낮았던 1차 만연의 역학적 특성이 식민지조선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던 듯하다. 오히려 1918년의 식민지조선은 독감 1차 만연 기간 동안 2월에 중국의 폐페스트 유행<sup>29)</sup>, 6월에 경성의 파라티푸스 유행<sup>30)</sup>이 문제되었던 것을 제외하면 “본년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치 않은 해는 처음 볼 뿐”이라 할 정도로 감염병에 관한 한 예년과 비교하여 안정적이었다.<sup>31)</sup> 게다가 이 시기 설사 독감을 앓았다 하더라도 “감기를 앓다가 장티푸스든지 파라티푸스로 변증되어 사망하는 수”가 많았던 탓

감, 流行性毒感, 류형성감기, 毒感, 서반아감기 등 6개의 서로 다른 명칭이 단일 지면에 동시에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당시 1918년 독감을 가리키는 명칭이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每日申報』가 1918년 독감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용어들을 모두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감기(감기, 感氣), 돌림감기(돌림감기, 돌림감기), 서반아감기(서반아감기), 악감기(악감기, 惡感氣), 악성감기(악성감기, 惡性感氣), 유행감기(류형감기, 流行感氣), 유행성감기(류형성감기, 流行性感氣), 독감(毒感), 유행독감(류형독감, 流行毒感), 유행성독감(류형성독감, 流行性毒感), 감모(感冒), 악감(惡感), 악감모(惡感冒), 악성감모(惡性感冒), 악성유행감모(惡性流行感冒), 유행감모(流行感冒), 유행성감모(류형성 감모), 유감(流感), 악성유감(惡性流感), 운감(輪感), 악성운감(惡性輪感). 이 밖에 『中外日報』 1928년 3월 12일자 2면에서 서반아독감(西班牙毒感), 스페인인플루엔자(스페인인푸레에자)와 같은 용어를 볼 수 있다. 한편 인터넷상에서 회자되는 무오년(戊午年)독감, 무오독감, 돌림고뿔과 같은 용어는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일제식민지시기의 신문지면에서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상의 용어들 가운데 조선총독부가 『조선총독부관보』(이하 관보)와 『통계연보』 같은 공식문서에서 사용했던 것은 감모, 악성감모, 유행성감모였다.

- 29) 「黑死病來濟南, 警務總監部の 防疫通牒」, 『每日申報』, 1918년 3월 1일, 2면.
- 30) 「傳染病流行, 싸라지부스와 장질부사가 치성」, 『每日申報』, 1918년 6월 13일, 3면; 「傳染病에 對 呼야 各學校에 主意, 총독부 학무국에서」, 『每日申報』, 1918년 6월 23일, 3면.
- 31) 「今年の 換節時는 傳染病이 극히 적었섯다」, 『每日申報』, 1918년 10월 12일, 3면; 반면 전종휘(1975), 『韓國急性傳染病概觀』, 개정3판, 서울: 최신의학사, p. 173에 따르면 6-10월 장티푸스의 전국적인 대유행이 있었다고 한다.

에 독감보다는 다른 세균성 감염병에 의한 합병증을 더 조심해야 할 상황이었다.<sup>32)</sup> 그러나 이는 착각이요 속단이었다. 곧 치명적인 독감 2차 만연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919년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1918년 당시 수도 경성에 유행한 독감 환자의 증례들을 보고했던 스코필드는 경성에서 본인이 첫 증례를 목격한 시기가 9월 말이었으며, 10월 중순이 되기 전에 유행이 그 정점에 이르렀다고 보고하였다.<sup>33)</sup> 이는 『매일신보』의 보도 내용과도 대체로 부합하는 것이다. 『매일신보』의 1918년 독감에 관한 10월 11일자 첫 기사를 보면 “몹시 아픈 … 유행성 감기”가 9월 23일경부터 평안북도 강계군에 발생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며,<sup>34)</sup> 10월 22일자 기사를 보면 “어느 집이든지 이 감기가 들어가지 않은 집이 없으며 또 들어가기만 하면 집안 식구의 반수 이상은 영락없이 몰아치는데 감기의 성질이 극히 사나워서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한번 걸리면 이삼일 동안은 고��하는 분수가 염병만 못하지 아니하”다며 경성의 유행 상황이 심각함을 언급하고는 “경성뿐 아니라 인천, 평양, 대구, 원산, 대전, 기타 각 도” 등 사실상 전국에 독감이 유행 증임을 보도하고 있다.<sup>35)</sup> 그리고 이를 뒤인 10월 24일자 기사에서는 “이번 독감은 … 삼사일 동안을 시름시름 앓다가도 별안간 병세가 변하여 폐경상한(폐렴)이 되면 하루 사이에 그만 죽어버리는 일이 많”다며 마침내 독감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다.<sup>36)</sup> 일주일이 지난 10월 30일자에 이르면 독감 합병증으로 죽는 이가 급증하여

32) 『每日申報』, 1918년 6월 13일, 3면.

33) Frank W. Schofield & H. C. Cynn (1919), p. 981.

34) 「平北 江界郡에 惡性の 流行病, 몹시 아픈 감기」, 『每日申報』, 1918년 10월 11일, 3면.

35) 「全朝鮮을 席捲하는 毒感은 世界的 大流行인가, 지독하는 감기는 팔도에 편만」, 『每日申報』, 1918년 10월 22일, 3면.

36) 「毒感은 惡性으로 變한다, 감기에 걸니거던 의식을 보라」, 『每日申報』, 1918년 10월 24일, 3면.

경성 본정경찰서(京城本町警察署)에 병명이 “유행성 감기 또는 급성 폐렴”인 사망진단서가 매일 평균 30여 장씩 접수되고 종로경찰서에는 대략 20장씩 접수되어 평소의 3배에 달한다고 보도하면서 매장 청원과 허가의 급증으로 날마다 각처의 공동묘지가 대혼잡을 이루고 있다고 전하였다.<sup>37)</sup> 이렇듯 『매일신보』가 독감 유행이 한창이던 10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독감에 대한 특장 보도를 하기 시작한 것은, 이 신문이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임을 감안하더라도, 식민지조선 내 일본인 언론에 까지도 기사 삭제나 발행 중지를 서슴지 않았던 무단정치가 총독부의 혹독한 언론 통제 정책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sup>38)</sup>

경성의 독감은 기세가 11월 초순부터 점차 누그러졌고 중순에 이르면 2차 만연이 사실상 종식되었다.<sup>39)</sup> 그러나 다른 지역들은 오히려 11월에 상황이 더 악화되어 수많은 사망자가 나왔다.<sup>40)</sup> 사태가 범상치 않음을 깨닫게 된 총독부도 11월부터는 『매일신보』를 통해 관련 기사 제목에 ‘대공포’, ‘전멸’, ‘비극’, ‘참화’, ‘참상’, ‘대공황’, ‘몰사(沒死)’와 같은 자극적인 용어를 붙여 가면서 전국 각지의 독감 유행 현황과 급증하는 환자 및 사망자 발생에 대한 보도를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냈다.<sup>41)</sup> 독감은 다음 달인 12월에도 지속되었고 더불어 사망자도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독감의 2차 만연이 식민지조선에서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은 해를 넘긴

37) 「埋葬請願이 激增, 경성경찰서에 미장청원이 평일의 삼 배나 드리오느니라」, 『每日申報』, 1918년 10월 30일, 3면.

38) 최혜주(2010), 『근대 재조선 일본인의 한국사 왜곡과 식민통치론』, 서울: 경인문화사, pp. 281-283.

39) 「毒感이 漸次終熄, 그러나 디방은 지금이 한창이다」, 『每日申報』, 1918년 11월 8일, 3면; 「京城의 毒感 亞조 終熄」, 『每日申報』, 1918년 11월 18일, 3면.

40) 「毒感餘熱」, 『每日申報』, 1918년 11월 5일, 3면; 「地方에는 如前 亨다, 류형감기가 한참 복거치는 중이다」, 『每日申報』, 1918년 11월 13일, 3면.

41) 『매일신보』 해당 기사들의 내용 정리와 분석은 이정은(1990), 박상표(2007), 서희원(2014) 등의 연구를 참조.

1919년 1월 무렵인 것으로 보인다.<sup>42)</sup> 『매일신보』의 보도 방향 역시 1월부터 주로 내지(內地), 곧 일본의 독감 재유행에 따른 상황을 기사화하는 쪽으로 바뀌었으며,<sup>43)</sup> 식민지조선과 관련하여서는 하루하루의 상황 보도보다는 독감 유행에 따른 전국적인 피해 결과를 종합하여 해설하거나<sup>44)</sup> 또는 독감 유행의 역사, 증상, 원인, 예방 등을 설명하는 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sup>45)</sup> 그러나 “구주(歐洲) 대전란의 전사한 사람보다도 훨씬 많은 사망자를 낸 돌림감기”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은 여전하였고, 따라서 1월 초순 재유행의 조짐이 보이자 『매일신보』는 “目下の感氣도 없이 여기지는 마라, 악성의 병균이 아직도 남았다”며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sup>46)</sup> 그런데 일본의 1월 재유행이 전년보다 더 심각하여 일본 당국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의 금지를 각 지방에 통첩한 것과 달

42) 이상원(2009)은 1918년 및 1919년도 『통계연보』에 실린 월별, 질병별 사망자 통계 결과를 분석한 것만으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식민지조선에서 1918년 독감의 유행 기간은 1918년 10월부터 1919년 1월까지였으며, 전국적인 유행으로 발전한 것은 11월로서 이때 유행의 정점에 도달하였다가 1919년 1월부터 평년 수준이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매일신보』 기사 내용과 스코필드의 관찰 결과를 같이 고려한다면 실제 유행 기간은 한 달 빠른 1918년 9월부터 1919년 1월까지였고, 유행의 극성기는 1918년 10월부터 1918년 12월까지 3개월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식민지조선의 독감 2차 만연은 본 논문 2.1에서 언급했던 1918년 독감 2차 만연의 일반적인 역학적 특징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이상원(2009), p. 17 참조.

43) 「大阪에 毒感復發, 日일 평균 이십인 (사망)」, 『每日申報』, 1919년 1월 19일, 3면; 「流行前に 禮防하라, 內地에서는 이 독감의 두 번씩 류형에 죽는 사람이 만타 혼다」, 『每日申報』, 1919년 2월 5일, 3면; 「流行性毒感, 경성에는 업는 모양, 동경서는 창궐 중」, 『每日申報』, 1919년 2월 13일, 3면.

44) 「惡性輪感의 死亡者가 實로 十四萬名」, 『每日申報』, 1919년 1월 30일, 3면.

45) 「流行毒感의 歷史, 류형감기의 징후와 예방법」, 『每日申報』, 1919년 2월 22일, 3면.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연재한 이 기사는 『朝鮮彙報』 1919년 1월호 pp. 93-98에 실린 原親雄과 牛島友記의 글 「流行性感冒의 歷史, 症候及豫防」을 번역한 것이다.

46) 『每日申報』, 1919년 1월 10일, 3면.

리, 식민지조선의 독감 재유행은 2차 만연보다 덜 치명적이었던 1919년 초 3차 만연의 역학적 특성을 따른 듯하다.<sup>47)</sup> 그 즈음의 『매일신보』가 경성에 “감기 환자가 있더라도 이왕 지독한 감기와는 증세가 다른 모양”이라고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sup>48)</sup> 1919년 봄의 따뜻한 날씨와 더불어 사그라진<sup>49)</sup> 독감은 식민지조선에서 동년 11월 초순부터 다시 유행하여 1920년 봄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사망자를 냈으나 1918년 독감 수준은 아니었다.<sup>50)</sup> 이후 1920년 겨울에도 다시 유행하였으나 이때에는 사망자가 많지 않았다.<sup>51)</sup>

그렇다면 식민지조선에서 1918년 독감의 2차 만연 시기에 해당했던 1918년 9월부터 1919년 1월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감으로 죽어간 것일까? 실제 독감이 유행했던 당시는 물론이거니와<sup>52)</sup> 조선총독부 간행물 등 일제식민지시기 자료들의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던 1970년대까지는 1918년 당시의 인명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더욱이 독감의 원인이 바이러스라는 사실이 규명된 것은 1918년으로부터 한참 뒤인 1933년의 일이었다.<sup>53)</sup> 하여 한국 감염학계의 태두인 내

47) 『每日申報』, 1919년 2월 5일, 3면.

48) 『每日申報』, 1919년 2월 13일, 3면.

49) 原親雄, 「論說, 流行性感冒の再襲豫防に就て」, 『警務彙報』, 1920년 3월호(제178호), p. 10.

50) 「二萬六千名の患者를 낚인 昨年末以來의 惡感」, 『每日申報』, 1920년 1월 20일, 3면; 이 기간 동안 독감 유행으로 “환자 43만여 명, 사망자 4만 3천여 명”이 발생하였다. 대한감염학회(2009), 『韓國傳染病史』, 서울: 군자출판사, p. 447에서 재인용. 원출처는 赤池濃, 「朝鮮의 衛生概觀」, 『朝鮮』, 1921년 10월호, p. 24.

51) 「今年 流感은 輕微, 비교덕 사망도 업다」, 『每日申報』, 1921년 1월 19일, 3면.

52) 스코필드는 일제 당국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이환자 및 사망자 수를 파악하는 것이 1919년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Frank W. Schofield & H. C. Cynn (1919), p. 981.

53) Wilson Smith *et al.* (1933), “A virus obtained from influenza patients,” *The Lancet* 222(5732).

과의사 전중휘(全鐘暉)는 1975년 저서에서 “따라서 流行性 感氣 또는 Influenza의 病原體에 대한 연구 및 疫學에 대한 보고는 해방 전(1945년) 까지에는 전혀 없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Influenza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적 유행 시에 한국에도 유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문헌은 볼 수 없고, 病原學的으로 국내에서 본 병이 논의되기는 1951년이 처음이었다고 인정된다”고 하였다.<sup>54)</sup> 그러던 것이 『매일신보』의 기사 내용을 분석한 이정은의 1990년 연구, 스코필드의 1919년 논문 내용을 분석한 천명석과 양일석의 2007년 연구 등이 나오면서 인명 피해의 전체 규모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두 연구 모두 보조 자료로서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통계연보』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당대 1차 자료에 해당하는 『매일신보』와 『통계연보』, 그리고 스코필드의 논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면 현재까지의 연구를 통해 알려진 1918년 독감으로 인한 인명 피해 규모 역시 대체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은이 자신의 연구에서 주요 논거로 삼은 『매일신보』 1919년 1월 30일자 기사는 분명한 출처 제시 없이 막연하게 “경무총감부에서 조사한 환자와 사망자의 수효”라 하여 식민지조선에서 발생한 독감 이환자 총수와 사망자 총수를 보도하고 있다. 이때는 한반도에서 독감 2차 만연이 종식된 직후이므로 2차 만연으로 인한 전체 인명 피해의 기본 수치가 제시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인은 159,91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1,297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한국인은 7,422,113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139,128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그리고 중국인과 기타 외국인은 6,363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9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를 합산하면 7,588,392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이 가운데 140,518명이 사망한 것이 된다.<sup>55)</sup> 그리고 이 기사의 제목에서 최초 등장한 ‘총 사망자 14만 명’이라는 수치는 이후 『매일신보』 1919년 3월 19일자 기

54) 전중휘(1975), p. 107.

55) 『毎日申報』, 1919년 1월 30일, 3면.

사에도 그대로 원용되었다.<sup>56)</sup> 또한 이 수치는 경무총감부 기관지였던 『경무회보』(警務彙報) 1920년 3월호에 실린 한 논설로써도 재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1918년 독감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1억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700여만 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되었고, 일본에서는 2천여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24만여 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식민지조선에서는 전 인구의 거의 1/3 이상이 감염되어 7,556,693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40,527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되었다.<sup>57)</sup> 결과적으로 식민지조선에서의 1918년 독감 치명률은 1.86%로서 독감 이환자 100명당 거의 2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앞서 『매일신보』의 기사와 비교하면 이환자는 31,699명 줄었고 사망자는 반대로 9명 늘었으나 ‘총 사망자 14만 명’이라는 수치에서는 서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매일신보』 기사로부터 약 1년 뒤에 작성된 글이므로 이러한 통계상 수치의 소폭 증감은 오히려 신중성이 더해진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14만이라는 수치는 다른 연구 결과나 자료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우선 첫째로 1915년-1923년에 걸친 『통계연보』의 사망자 통계 결과를 분석한 이상원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런데 『통계연보』에는 1918년 독감을 특정하여 이환자나 사망자의 총수를 싣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이상원은 총독부가 분류한 공식 사인(死因) 가운데 호흡기병(呼吸器病), 감모(感冒), 전염성병(傳染性病) 등 세 가지 질환을 1918년 독감으로 간주하고 해당 기간의 연도별 조사망률을 구한 다음, 이를 토대로 1918년 독감에 의한 한국인 사망자 총수를 추정한 결과 143,787명이라

56) 『大悲劇, 大慘事』, 『每日申報』, 1919년 3월 19일, 3면.

57) 『警務彙報』, 1920년 3월호, p. 10; 천명석, 양일석(2007)은 이정은이 인용한 『매일신보』 기사에 언급된 경무총감부 통계 결과를 두고 『경무회보』와 같은 경무총감부 내부 자료와의 비교 확인 작업을 거치지 못한 채 『통계연보』 1918년판과의 비교 작업만을 거쳐 “매일신보 기사는 조선총독부 자료를 인용했다고 하지만, 1918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는 일치하는 자료가 없다”고 하였다.

는 수치를 얻어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독감의 영향을 1918년 한 해로 한정시키고, 1918년 당시 식민지조선에 거주하던 한국인 총 16,697,017 명만을 대상으로 하여 얻어낸 최소 수치이다. 따라서 1918년 당시 재조 일본인 336,872명과 기타 외국인 23,143명을 전부 합산하거나 또는 독감의 영향을 1919년 내지 1920년으로까지 확대하여 다시 계산하면 사망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sup>58)</sup> 다음으로 둘째,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총독부 기관지 『조선휘보』(朝鮮彙報) 1919년 3월호에도 1918년 독감으로 인한 “患者 7,556,693, 死者 140,527, 死亡率 1.85”라는 기록이 나온다.<sup>59)</sup> 『조선휘보』 1919년 3월호에 실린 이 수치는 1년 뒤인 1920년 3월, 앞서 언급한 『경무휘보』의 논설에 그대로 재인용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조선총독부는 1918년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를 14만여 명으로 공식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식민지조선 내 1918년 추정 인구 총 17,057,032명의 거의 1%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이를 다시 환산하면 독감에 의한 사망률은 0.82%로서 1918년도 인구 1,000명당 8.2명이 독감으로 사망한 셈이다. 1918년 독감에 의한 전 세계 사망률을 추정하는 서구의 연구들을 보면 최소 0.25%에서 최대 2.17%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은 결과들을 산출하고 있는 바, 이와 비교해 보면 식민지조선에서는 평균 수준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sup>60)</sup>

그런데 이상의 통계 기록만으로, 식민지조선에서 독감이 유행하던

58) 한국인, 일본인, 외국인별 인구수는 『통계연보』 1918년판에 의거한 것이다. 그리고 이상원에 따르면 독감의 영향을 1918-1920년 3년간으로 확대하여 다시 계산할 경우 한국인 사망자가 최대 203,107명으로 늘어난다. 이상원(2009), pp. 17-18 참조.

59) 「流行性感冒」, 『朝鮮彙報』, 1919년 3월호, p. 88. 여기에 언급된 “死亡率”은 현재의 용어로 바꾸면 사망률이 아니라 치명률(치사율)을 가리킨다.

60) K. David Patterson & Gerald F. Pyle (1991), p. 15; Niall P.A.S. Johnson & Juergen Mueller (2002), p. 114; Christopher J. L. Murray *et al.* (2006), “Estimation of potential global pandemic influenza mortality on the basis of vital registry data from the 1918-20 pandemic: a quantitative analysis”, *The Lancet* 368(9554), p. 2213.

1918년 9월부터 1919년 1월까지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과연 실제로 14만여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독감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도 될까? 일제식민지시기 가장 기본적인 통계 자료에 해당하는 『통계연보』만 놓고 평가하자면 1918년 독감 범유행 기간의 독감과 관련한 통계만큼은 일정 정도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61)</sup> 황상의 연구에 따르면 『통계연보』는 정확도에 문제가 있긴 하나 일제식민지시기 동안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물론 한국인 법정감염병 환자나 사망자와 관련한 『통계연보』의 기록은 전혀 신뢰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많지만, 일제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던 1918-1919년 독감 범유행과 1919-1920년 콜레라 유행 시기의 한국인 환자 관련 기록은 일정 정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62)</sup>

하지만 『통계연보』의 데이터를 근거로 이상원이 산출한 연령별 독감 사망률은 서구의 기존 연구들을 통해 드러난 1918년 독감의 독특한 연령별 사망률 패턴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1918년 독감 범유행은 일반적인 독감과 달리 10세 이하 어린이들과 60세 이상 노인들과 더불어 신체적으로 한창 때인 15-30대 청년들의 사망률이 유독 높았다는 특징을 보이나 『통계연보』 데이터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포착할 수 없다. 청년층의 사망률은 장년층과 큰 차이가 없고, 어린이들의 사망률은 오히려 청년층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이상원은 독감에 대한 인종적 감수성 차이와 1918년 독감의 중국 기원설을 그 이유로 추정하고 있지만 식민지조선이라고 해서 예외였다고 보기 어렵다.<sup>63)</sup> 인종적 감수성의 차

61) 『통계연보』의 경제 관련 통계를 연구한 허수열에 따르면 『통계연보』의 통계 체제는 1918년 이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자리를 잡아 갔다고 한다. 식민지배 초기인 1910-1917년까지의 통계는 조선총독부 스스로도 부정확하다고 보아 『통계연보』 1918년판과 1919년판에서 2회에 걸쳐 수정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허수열(2011),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 파주: 한길사, p. 13, pp. 368-369.

62) 황상익(2015), 『보건의료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식민지 근대화론의 허와 실』, 『역사가 의학을 만났을 때』, 서울: 푸른역사, pp. 252-277.

이는 단순한 추정일 뿐 선행 연구가 없으며 현재로서는 입증할 방법도 없고, 중국 기원설은 크리스토퍼 랭포드(Christopher Langford)의 2005년 연구<sup>64)</sup>에 근거한 추정이며 비록 지금도 꾸준히 지지를 받고 있는 가설이긴 하나 독감 유행 당대에 이미 우론편(伍連德) 같은 저명한 의학자를 포함하여 중국인 의학자들에 의해 부정되었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sup>65)</sup>

더욱이 『조선휘보』 1919년 3월호의 논설을 보면 『통계연보』와 달리 1918년 독감만을 유행성 감모, 즉 독감으로 특정하고 연령별 사망자 수를 조사하여 5세 미만, 20-30세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특히 높은 사망률을 보였음을 보고하고 있다.<sup>66)</sup> 이는 1918년 독감의 독특한 연령별 사망률 패턴과도 대체로 부합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점은 어린이와 청년층의 높은 감염 상황을 보도하고 있는 『매일신보』 기사들을 통해서도 어렵잖게 확인된다.<sup>67)</sup> 사망 상황 역시 마찬가지로 1918년 11월 22일자 기사를 보면, 9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발생한 경성 종로경찰서 관내의 독감 사망자 총수는 1,163명으로서 “나이로는 여섯 살 미만의 소아가

63) 이상원(2009), p. 50, p. 71.

64) Christopher Langford (2005), “Did the 1918-19 influenza pandemic originate in Chin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1(3).

65) Howard Phillips & David Killingray eds. (2003), p. 102; John M. Barry (2004), “The site of origin of the 1918 influenza pandemic and its public health implications,” *Journal of Translational Medicine* 2(3).

66) 『朝鮮彙報』, 1919년 3월호, p. 89. 그런데 조선총독부라는 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두 자료 『통계연보』와 『조선휘보』의 1918년 독감에 따른 연령별 사망자 통계 결과가 이렇듯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독감에 따른 사망자 총수에서는 두 자료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향후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임채성의 연구도 『조선휘보』 1919년 3월호의 논설에 의거하여 연령별 사망률의 차이에 대한 논지를 펴고 있으나 『통계연보』의 데이터에 대한 언급은 없다. Chaisung Lim (2011), pp. 72-73 참조.

67) 「目下 流行하는 毒感은 조심하여야 한다」, 『每日申報』, 1918년 10월 17일, 3면; 「毒感 各學校를 侵襲, 각 학교에 결석자가 다수함」, 『每日申報』, 1918년 10월 19일, 3면.

많고 그로부터 이십 세 이상 삼십 세까지이라”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10월부터 11월 15일까지 발생한 경성 본정경찰서 관내의 환자 수는 “실로 오만 이천여 명에 이르렀”고 “나이로는 이십 세로부터 삼십 세 전후의 자가 많았다”라고 보도하고 있다.<sup>68)</sup> 이러한 기록들로 미루어 『통계연보』의 1918년 독감 관련 데이터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문제는 『통계연보』에 실린 데이터 상당 부분이 경찰의 검병호구조사(檢病戶口調査) 또는 검병적호구조사(檢病的戶口調査)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것이라는 점이다.<sup>69)</sup> 일제식민지시기, 특히 무단정치기의 경찰이 실시한 강압적인 호구조사에 대한 평소 한국인들의 거부감과 비협조를 감안하면 환자 실태 파악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인이 재조일본인보다 저조한 결과를 보였을 것임은 당연하다. 전종휘 역시 “... 다수 민중의 보건지식 부족과 경찰의 武斷的인 위생행정은 주민들의 협조를 얻을 수 없어서 방역 면에서 큰 성과를 기대기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 따라서 그때 방역통계에 나타난 전염병환자 수효는 실제 발생환자 수효의 몇 %에 해당할 수 있었을는지 알 바 없으며 주로 적발되어 강제로 避病院에 수용된 환자들의 수효라고 생각하면 그리 틀릴 바 없지 않을까 한다”라고 하여 이를 일정 부분 뒷받침해 주고 있다.<sup>70)</sup> 그러므로 이상의 문제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건대 3차 만연 시기의 사망자까지 고려한다면 식민지조선의 실제 독감 사망자 총수는 『통계연보』나 다른 일제의 자료에 나타난 수치인 14만여 명보다 오히려 더 높았을 개연성이 있다.

68) 「今番 感氣는 官公吏 事務員 갓흐니가 데일 만히 알은 모양이라 혼다.」 『每日申報』, 1918년 11월 22일, 3면.

69) 「毒感의 病者는 警察의 調査만 七千名.」 『每日申報』, 1918년 10월 26일, 3면; 「檢病戶口調査.」 『每日申報』, 1919년 2월 10일, 3면; 「檢病第一日所得.」 『東亞日報』, 1925년 7월 30일, 2면.

70) 인용문 중 ‘그때’란 1910년대가 아니라 1930-40년대를 가리킨다. 전종휘(1975), p. 9.

### 3. 1918년 독감과 조선총독부 방역정책

#### 3.1. 1918년 이전 조선총독부의 방역정책 형성 과정

1918년 독감이 식민지조선에 유입된 주 전파 경로는 스코필드가 추정 한 대로 시베리아 횡단 철도였을 것이며, 이를 통해 유럽에서 러시아와 만주를 거쳐 한반도 북부로 독감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71)</sup> 그것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매일신보』의 1918년 독감에 관한 첫 기사가 평안북도 강계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10월 11일자 지면에 실린 이 기사는 “몹시 아픈 … 유행성 감기”가 “9월 23일경부터” 강계군에 발생하였으며 “그 전파력이 자못 맹렬”하여 “각 관청과 같은 데도 약 반수의 결근자가 생기고 지금도 자꾸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sup>72)</sup> 이를 뒤인 10월 13일자 두 번째 기사는 평안남도 강서군 시찰단 38명이 10월 4일에 기차를 타고 목적지인 수원으로 향하던 중 신막 역에서 기차를 바꾸어 탔는데 이후 기차 안에서 집단으로 발병하여 증상이 심한 2명이 경성에 내려 치료받고 나머지 일행은 되돌아갔으며, “그 병세는 유행성 감기와 같은 것”이라고 보도하였다.<sup>73)</sup> 더욱이 10월 15일자 세 번째

71) Frank W. Schofield & H. C. Cynn (1919), p. 981; 그런데 K. David Patterson & Gerald F. Pyle (1991)은 pp. 10-11에서 특별한 논거 제시도 없이 스코필드의 견해가 틀렸다고 반박한다. 이들의 논문 p. 12에 실린 독감 확산 지도로 미루어 아마도 두 사람은 1918년 독감이 대서양 횡단 선박들을 통해 북미에서 동아시아로 유입되었다고 보는 듯하다.

72) 『毎日申報』, 1918년 10월 11일, 3면.

73) 「江西視察團 全團員の罹病, 기차 속에서 감염」, 『毎日申報』, 1918년 10월 13일, 3면; 『매일신보』는 이듬해인 1919년 1월 30일자 3면의 기사에서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전국 각 시가지에 독감이 만연하였다면서 이 사건을 독감 유행의 시작으로 보는 듯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벌써 그 이전에 그보다 북쪽인 평안북도에서 독감이 발생했음을 신문 스스로가 보도하였으므로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기사는 경성중학교 5학년 일본인 학생 75명이 만주 여행 중인데 이 가운데 28명이 “유행성 감기”에 걸렸고 중증인 4명이 봉천(奉天)과 대련(大連)의 만철병원에 입원했다고 보도하고 있다.<sup>74)</sup> 그리고 10월 16일자 네 번째 기사는 함경남도 원산의 유행 상황을 보도하였으며,<sup>75)</sup> 10월 17일자 인 다섯 번째 기사에 이르면 벌써 수도 경성의 유행 상황을 보도하면서 독감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sup>76)</sup> 따라서 기사 내용의 추이를 보면 독감이 만주를 기점으로 철도망을 따라 한반도 북부에서 빠른 속도로 남하하여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독감이 남만주철도 선로<sup>77)</sup>를 따라 한반도 북부에서 남부로 퍼졌다는 스코필드의 견해가 타당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sup>78)</sup>

74) 『京中生 多數가 旅行中에 病들어, 교당이 급형하였다』, 『每日申報』, 1918년 10월 15일, 3면.

75) 『官廳役所에 次勤者半數, 원산에도 돌님감기』, 『每日申報』, 1918년 10월 16일, 3면.

76) 『目下 流行하는 毒感은 조심하여야 한다』, 『每日申報』, 1918년 10월 17일, 3면.

77) Frank W. Schofield & H. C. Cynn (1919)가 “line of the Southern Manchurian Railway”라고 표현한 이 철도는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는 이른바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Siberian Railway, TSR)의 만주 통과 구간인 동청철도(Chinese Eastern Railway, CER) 남만주지선(支線)을 가리킨다. 동청철도 중간 기점인 하얼빈에서 장춘(長春)과 봉천을 거쳐 대련에 이르는 950 km와 대련에서 여순(旅順)으로 이어지는 45 km 지선을 포함하는 이 남만주지선은 흔히 남만주철도(South Manchurian Railway, SMR)라 불리는데, 1896년 이미 청국으로부터 동청철도 부설권을 얻어낸 러시아가 만주 전역으로 철도 지선을 확대하기 위해 1898년 다시 청국을 압박하여 ‘여순 대련만 조차조약’ 체결 후 1903년 최종 완공한 노선이다. 1905년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통해 남만주지선 장춘-여순 구간을 러시아에게서 양도받은 이후부터 1931년 만주사변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 남만주철도라 하면 원래의 동청철도 남만주지선 하얼빈-여순 구간보다 줄어든 이 장춘-여순 구간과 이후 일본이 확장한 그 파생 지선들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이 노선들은 1907년 2월 일본이 설립한 국책회사인 남만주철도주식회사(만철)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근호(2004), 『일본의 중국 및 만주침략과 남만주철도: 만주사변(1931)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평화연구』 12(1),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pp. 153-165 참조.

78) 이상원(2009)은 『통계연보』 1918년판에 실린 월별, 지역별 사망자 통계 결과를 분

만주는 일제, 특히 1910년대의 조선총독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역이었다. 조선총독은 육군대장 출신으로서 무단정치의 출발점이 된 초대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이후 전부 무관인 육해군 대장 중에서 선임되었다. 그러나 역대 총독 중 한 명을 제외하면 모두 육군대장 출신이었을 만큼 식민지조선은 육군 군벌의 영향력이 강하게 행사되던 지역이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계의 주요 세력으로 자리 잡은 육군 조슈벌(長州閥)계였던 데라우치와 2대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통치하던 1910년대의 식민지조선은 더욱 그러하였다. 이들은 러일전쟁 승리 이래 확립한 육군 군벌의 북진대륙정책, 곧 선만(鮮滿) 일체화를 기본 전제로 한국을 통치하였다. 한국과 만주를 일체화하여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대륙으로 나아가려는 이러한 군사적 관점은 식민지조선의 운명을 자연스럽게 결정지었다. 그것은 일본 육군의 대륙 침략을 위한 전진기지화였다. 따라서 병합한 한국의 치안 확보와 이를 통한 식민지배의 안정은 초대총독 데라우치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다. 데라우치는 이를 위하여 조선 의병 진압의 주력이었던 조선주차군(朝鮮駐紮軍)을 군사경찰화한 강력한 헌병경찰제도를 확립하였다.<sup>79)</sup>

---

석하여 1918년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가 가장 먼저 관찰된 지역이 전라남도(9월) 지역이므로 독감은 스코필드의 추정과 달리 만주가 아닌 중국으로부터 목포와 같은 남쪽 항구를 통해 한반도로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나아가 C. Langford (2005)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1918년 독감 범유행이 구미가 아닌 중국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통계연보』의 데이터는 신뢰성이 떨어지고, 랭포드의 주장은 여전히 가설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1918년 독감의 중국 유래설은 『통계연보』 이외의 다른 사료적 뒷받침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1918년 10월 22일자 3면에 실린 『매일신보』 기사를 보면 일제 역시 한반도 독감 유행의 기원을 한반도 북부라고 보고 있었던 듯하다. “만주 지방에도 유행할 뿐 아니라 일본 내지에도 그다지 심하지는 아니하나 각 지방에 차차 돌림감기가 유행한다는 말이 신문에 보이며 지난 십칠일 미주로부터 횡빈(요코하마)에 들어온 「츄방환」이라는 배편에는 방금 미주에서는 돌림감기가 비상히 유행하여 그 배에도 병자를 신고 들어왔다 하며”라 하여 독감 유행이 일본보다 만주에서 선행하였음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910년대 무단정치의 핵심 기구였던 헌병경찰제도는 병합 직전인 1910년 6월 29일 공포된 칙령 제296호 ‘통감부경찰관서관제’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며, 당시 한국통감이었던 데라우치는 치안 유지를 이유로 군과 경찰을 일원화하고 경찰을 헌병에 예속시켰다. 그 결과 대한제국 내부(內部)의 경무국과 한성부의 경시청이 폐지되고 통감 직속의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가 중앙에 새로 설치되었으며, 각 도의 경찰부는 경무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리고 경무총감부의 수장인 경무총장은 한국주차 헌병사령관이, 각 도 경무부의 수장인 경무부장은 각 도 헌병대장이 겸임하였다.<sup>80)</sup> 이러한 구도는 1910년 8월 29일 병합으로 데라우치가 조선총독에 취임한 이후에도 칙령 공포를 통해 일부 내용만 개정된 채 고스란히 이어졌다.<sup>81)</sup> 아울러 1910년 10월 1일 공포된 조선총독부훈령 제4호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사무분장규정’에 의거하여 경무총감부는 서무과, 고등경찰과, 경무과, 보안과, 위생과 등 5개 과를 두고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을 통해 한국인의 일상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기를 본격화하였다.<sup>82)</sup> 경무총감부를 정점으로 한 이 헌병경찰 체제는 한국인에 대한 일상의 폭력성을 수반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헌병경찰은 1910년 12월 5일 공포된 제령(制令) 제10호 ‘범죄즉결례’<sup>83)</sup>에 의거하여 관할구역의 한국

79) 전상숙(2012), 『조선총독정치연구』, 파주: 지식산업사, pp. 59-115, pp. 191-206; 조경달(2013), 최혜주 역, 『식민지조선과 일본』,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2015, pp. 13-19.

80) 內閣官報局, 『勅令第296號 統監府警察官署官制』(1910년 6월 29일), 『法令全書, 明治43年』(官報 1910년 6월 30일), pp. 411-413.

81) 『勅令第343號 朝鮮駐劄憲兵條例』(1910년 9월 10일), 『朝鮮總督府官報』(1910년 9월 16일), pp. 71-72; 『勅令第358號 統監府警察官署官制中改正』(1910년 9월 30일), 『朝鮮總督府官報』(1910년 9월 30일), pp. 126-127.

82) 『朝鮮總督府訓令第4號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事務分掌規程』(1910년 10월 1일), 『朝鮮總督府官報』(1910년 10월 1일), pp. 23-25.

83) 『制令第10號 犯罪即決例』(1910년 12월 15일), 『朝鮮總督府官報』(1910년 12월 15일), p. 65.

인에게 벌금과 구류는 물론이고 재조일본인에게는 없는 태형(笞刑)<sup>84)</sup>까지 가할 수 있었다.<sup>85)</sup> 게다가 태형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남용되는 경향이 있었다.<sup>86)</sup>

헌병경찰제도가 한국인의 일상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억압과 통제의 기구로 작동한 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무단정치기 내내 경무총감부로 집중된 위생사무의 일원화 과정이다.<sup>87)</sup> 경무총감부에서 위생사무를 주관했던 행정단위는 위생과였으며, 그 하부조직으로 보건계와 방역계가 있었다.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위생과 역시 소속 경찰인력 가운데 헌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다.<sup>88)</sup> 경무총감부 외에 내무부 지방국(地方局) 위생과에서도 경무총감부 위생과와 유사한 위생사무를 담당하였으나,<sup>89)</sup> 1912년 4월부터 내무부 지방국이 제1과와 제2과로 완전히 개편되면서 위생과 자체가 없어지고 다만 제2과에서 조선총독부의원과 도 자혜의원을 관할하는 것으로 위생사무가 대폭 축소되었다.<sup>90)</sup> 이와 동시에 관립의원 관련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위생사무 일

84) 『制令第13號 朝鮮笞刑令』(1912년 3월 18일), 『朝鮮總督府官報 號外』(1912년 3월 18일), p. 10.

85) 조정달(2013), pp. 19-22; 국사편찬위원회(2003), 『한국사: 일제의 무단통치와 3·1 운동』, 제47권, 서울: 탐구당, 2013, pp. 45-46.

86) 야마베 겐타로(1971), 최혜주 역, 『일본의 식민지조선통치 해부』, 서울: 어문학사, 2011, pp. 40-41.

87)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 박윤재(2005), pp. 330-344; 정근식(2011), pp. 230-253.

88) 정근식(2011), pp. 232-238.

89) 『朝鮮總督府訓令第2號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通正』(1910년 10월 1일), 『朝鮮總督府官報』(1910년 10월 1일), p. 21.

90) 『朝鮮總督府訓令第27號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通改正』(1912년 3월 30일), 『朝鮮總督府官報』(1912년 3월 30일), p. 263; 『朝鮮彙報』 1915년 3월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총독부는 경무총감부 위생과와 내무부 지방국 위생과 간의 권한쟁의를 막기 위해 1911년 8월 사무분장규정을 개정하여 내무부 지방국 위생과를 아예 폐지해 버렸다. 그러나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해당 시기 『관보』에 이와 관련한 훈령

체, 심지어 그간 내무부 위생과에서만 담당해 왔던 전문적인 의학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까지 전부 경무총감부, 곧 경찰 소관으로 바뀌었다.<sup>91)</sup> 게다가 같은 시기인 1912년 4월부터 탁지부가 주관하던 해항검역(海港檢疫)과 이출우검역(移出牛檢疫)에 관한 사무 역시 경무총감부 위생과의 방역계로 넘어갔다.<sup>92)</sup> 이로써 경무총감부는 보건계와 방역계로 구성된 위생과<sup>93)</sup> 외에 지방의 해항검역소와 부산의 이출우검역소까지 직속위생기관으로 거느린 방대한 조직으로 발전하여 식민지조선의 공중위생과 관련한 사실상 모든 행정을 관할하게 되었다.<sup>94)</sup> 그리고 위생 행정을 경찰이 주관하는 이러한 경향은 일제식민지시기 내내 유지되었다. 따라서 식민지조선의 위생행정은 기반시설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한정된 경찰력을 동원하여 피해를 차단하는 데 급급한 단속 위주의 사후 처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경무총감부 내 위생행정 조직 및 업무의 개편과 더불어 일제는 그 일선 인력인 헌병경찰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행정적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는 정기적인 청결사업, 기차와 선박 같은 교통수단의 검역, 검병호구조사 등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수렴되었다.<sup>95)</sup> 그 주된 목적은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급성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데 있었다. 화학요법제나 항생제와 같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공포의 기록이 없거나 또는 찾을 수 없었다. 박윤재(2005), pp. 333-334 및 『衛生に關する一般概況』, 『朝鮮彙報』, 1915년 3월호, pp. 129-133 참조.

91) 『朝鮮總督府訓令第18號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事務分掌規程中通改正』(1912년 3월 28일), 『朝鮮總督府官報』(1912년 3월 28일), p. 15.

92) 『朝鮮總督府官報』(1912년 3월 28일), p. 15; 『朝鮮彙報』 1915년 3월호, p. 131.

93) 이후 1917년에 개정된 경무총감부의 사무분장규정을 보면 보건계와 방역계의 구분이 없어지고 위생과라는 단일 행정단위로서 위생사무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 『朝鮮總督府訓令第11號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事務分掌規程通改正』(1917년 3월 24일), 『朝鮮總督府官報』(1917년 3월 24일), p. 336.

94) 『朝鮮彙報』 1915년 3월호, pp. 131-133.

95) 박윤재(2005), pp. 344-372.

개발되기 훨씬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대 식민지조선에서 급성 감염병의 치료적 접근은 거의 대부분 환자의 자연치유를 보조하는 대증 요법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1930년대에 이르러 디프테리아와 파상풍에 면역혈청요법과 같은 특수치료가 적용되었지만 그마저 품귀로 충분한 용량을 사용하지 못해 치료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였고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았다.<sup>96)</sup>

정기적인 청결사업은 1912년 2월 26일 경무총감부령 제3호가 공포되면서 가장 먼저 법적으로 구체화되었다.<sup>97)</sup> 이에 의거하여 식민지조선의 한국인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매년 봄과 가을에 자신의 거주지와 주변을 해당 령에 명시된 방법대로 ‘경찰관리’의 지시에 따라 청결하게 해야 했다. 경찰에게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주하는 근처가 청결치 못하여 위생상의 방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되면 소관 경찰서에 강제로 끌려가 태형을 당하기도 하였다.<sup>98)</sup> 3년 뒤인 1915년 7월 12일에는 조선총독부령 제71호 ‘청결방법및소독방법’이 공포되면서 평상시뿐 아니라 감염병 유행시의 청결 및 소독방법까지 포괄하는 세부지침이 마련되었다.<sup>99)</sup> 한편 급성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조치였던 교통수단의 검역은 앞서 언급한 ‘청결방법및소독방법’ 공포와 같은 날인 1915년 7월 12일 조선총독부령 제70호 ‘선박·기차·여객검역규칙’의 공포로써 법제화되었다.<sup>100)</sup> 이는 1915년 6월 5일 공포된 제령 제2호 ‘전염병예방법령’ 중 제14조에 의거하여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

96) 전중휘(1975), pp. 19-20.

97)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令第3號』(1912년 2월 26일), 『朝鮮總督府官報』(1912년 2월 26일), p. 225.

98) 『위생방해자의 태형』, 『每日申報』, 1913년 4월 30일, 3면.

99) 『朝鮮總督府令第71號 清潔方法及消毒方法』(1915년 7월 12일), 『朝鮮總督府官報』(1915년 7월 12일), pp. 135-137.

100) 『朝鮮總督府令第70號 船舶·汽車·旅客檢疫規則』(1915년 7월 12일), 『朝鮮總督府官報』(1915년 7월 12일), pp. 134-135.

가 있을 때 조선총독이 검역위원을 두어 검역예방에 관한 사무를 담임하게 하고 특히 선박, 기차, 여객의 검역을 할 수” 있게 한 규정이었다.<sup>101)</sup> ‘전염병예방령시행규칙’ 역시 같은 날인 1915년 7월 12일 조선총독부령 제69호로 공포되었는데,<sup>102)</sup> 청결방법및소독방법과 선박·기차·여객검역규칙과 마찬가지로 실제 시행은 전염병예방령 시행일인 1915년 8월 1일에 맞추어졌다.<sup>103)</sup> 이는 전염병예방령의 효과적인 시행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였다. 전염병예방령이 공포되고 시행됨으로써 일제식민지시기 동안 유지되었던 경찰 중심 감염병 방역 체계의 법적 근거가 확립되었다. 위생사무를 둘러싸고 이전부터 알력 관계에 있었던 내무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무총감부가 입안을 주도하여 시행에 들어간 전염병예방령은 헌병경찰이 방역의 주체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 무단성을 합법화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제2조를 보면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을 때 전염병예방령을 적용할 수 있는 주체는 다음 아닌 각 도 경무부장이었으며, 말단의 시행 주체 또한 경찰관리, 헌병 등임을 령 곳곳에 명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하위법인 전염병예방령시행규칙, 선박·기차·여객검역규칙, 청결방법및소독방법 등의 시행 주체 역시 헌병경찰임은 자명한 귀결일 수밖에 없었다.

경무총감부가 무단적 성격의 전염병예방령을 서둘러 입안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무단정치기 조선총독부가 복진대륙정책을 고수했던 점을 감안하면 1914년 7월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영일동맹을 구실로 독일에 곧장 선전포고를 하고 중국 내 독일 조차지인 산둥반도를 육군이 무력으로

101) 『制令第2號 傳染病豫防令』(1915년 6월 5일), 『警務彙報』, 1915년 6월호(제98호), p. 72.

102) 『朝鮮總督府令第69號 傳染病豫防令施行規則』(1915년 7월 12일), 『朝鮮總督府官報』(1915년 7월 12일), pp. 133-134.

103) 『朝鮮總督府令第68號 傳染病豫防令』(大正4年8月1日ヨリ之ヲ施行ス) (1915년 7월 12일), 『朝鮮總督府官報』(1915년 7월 12일), p. 133.

점령하였다. 이듬해인 1915년 1월 일제는 산동의 권익을 보장받는 것 외에도 1905년 러시아로부터 양도받은 남만주철도에 대한 권리의 연장을 포함한 남만주 및 내몽골 일부의 조차를 목적으로 중국 정부에 이른바 ‘21개 조 요구’를 하였다. 결국 1915년 5월 중국의 수락을 받아내긴 하였으나, 그때까지 조선주차군이 언제 만주로 출병할지 모르는 준전시 상황에서 데라우치 총독<sup>104)</sup>을 위시한 총독부의 무관들에게 방역은 군사행동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병사들의 위생과 건강 유지, 그리고 식민지조선의 안정은 출병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해 6월 제령으로 공포된 식민지조선의 전염병예방령은 헌병경찰이 주도하는 군사적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sup>105)</sup> 하지만 군대와 경찰을 앞세운 일제의 무단적인 방역 행태는 이미 통감부시기이던 1907년과 1909년의 콜레라 유행을 계기로 식민지조선에 이미 정착한 상태였다.<sup>106)</sup> 또한 병합 직후인 1910년 9월부터 1911년 3월까지 만주에서 유행한 페페스트는 경무총감부 중심의 방역 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만주 페페스트의 유행은 식민지조선에서 헌병경찰의 세관검역, 기차검역, 선박검역 등을 법제화하는 출발점이 되었다.<sup>107)</sup> 결과적으로 경무총감부 주도의 전염병예방령 입안과 시행은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상 급성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조기발견이었으므로 경찰이 가장 중시한 방역 수단은 경찰이 가가호호 순

104) 데라우치는 남만주철도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인물이다. 러일전쟁 당시 육군 대신이었던 그는 만주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러일전쟁 뒤인 1906년 6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설립조령’을 공포하였으며, 7월에는 설립위원장을, 1907년 1월에는 철도회의 의장까지 역임하면서 남만주철도를 한국 북부와 연결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상숙(2012), p. 75.

105) 이형식(2012), 『1910년대 식민지제국일본의 전염병 방역대책: 조선전염병예방령을 중심으로』, 『日本學報』 92, 韓國日本學會, pp. 304-305.

106) 박윤재(2005), pp. 198-212.

107) 신규환(2012), pp. 451-458.

시하면서 직접 환자를 적발해 내는 검병호구조사였다. 한국인들은 가족 중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여도 신고<sup>108)</sup>하기보다는 숨기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경찰은 감염병 발생이 확인되면 검병호구조사로써 관할구역의 주민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sup>109)</sup> 조사 당시 집에 없는 사람은 귀가 후 다시 조사를 할 정도로 철저하게 시행하였던<sup>110)</sup> 이 검병호구조사는 전염병예방법 제13조 “전염병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호주, 관리인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에게 고지하고 가택, 선박, 기타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무총감부가 호구조사의 분명한 법적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전염병예방법 공포보다 2개월 앞선 1915년 4월 19일 경무총감부 사무분장규정을 개정할 때 ‘호구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부터이다.<sup>111)</sup> 이는 경무총감부 경무과 소속 민적계에서 담당했던 기존 ‘호구 및 민적에 관한 사항’이 확장된 개념이다.<sup>112)</sup> 그리고 1916년 1월 24일 경무총감부 공문을 통해 ‘호구조사규정’이 공포되면서 경찰이 주관하는 호구조사가 정식으로 법제화되었다.<sup>113)</sup> 하지만 병합 직후부터 벌써 경찰과 헌병에 의한 감염병 유

108) 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나 그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일반민가의 호주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가 … 즉시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요구하거나 경찰관리, 헌병 또는 검역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했다.

109) 1916년 2월 당시 경기도 경무부장이었던 구마베 치카노부(隈部親信)는 한 담화에서 “환자를 조기발견함에 대하여 가장 유효한 방법은 검병적 호구조사인데 경찰에서는 이 검병적 호구조사에 가장 치중하여 예방의 실적을 올리기에 노력할지라. 특히 작년 성홍열 유행 이래로 가능하면 그 조사 정도를 증가하고 또 면밀히 행하였더니 조선인 가운데 왕왕히 그 조사 반기를 싫어하여 집에 있으면서 없다고 핑계대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며 심한 사람은 집안에 숨는 사람도 있다 하니 이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그런 것이다”라고 언급하여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檢病的戶口調査』, 『毎日申報』, 1916년 2월 3일, 2면.

110) 박윤재(2005), pp. 361-362.

111) 『朝鮮總督府訓令第25號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事務分掌規程中通改正』(1915년 4월 19일), 『朝鮮總督府官報』(1915년 4월 19일), p. 255.

112) 『朝鮮總督府官報』(1910년 10월 1일), p. 24.

행시의 검병호구조사<sup>114)</sup> 및 일반적인 호구조사<sup>115)</sup>가 일상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기존 관행을 법조문화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관행이 가능했던 것은 이미 대한제국시기였던 1899년 8월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디프테리아, 발진티푸스, 두창 등 6종의 감염병을 법정감염병으로 규정한 ‘전염병예방규칙’이 공포되었고, 1910년 8월에는 정식 공포된 법령은 아니나 경찰조직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되었던 ‘전염병보고례’에 기존 6종의 법정감염병 외에 성홍열과 페스트가 추가됨으로써 총 8종의 감염병 유행시 한국인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116)</sup>

호구조사란 국가가 전국적인 인구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식민지조선에서는 한국인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찰 주관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sup>117)</sup> 1916년 공식화된 호구조사규정 역시 제1조에서 “경찰서장은 호구조사 담당(受持) 구역을 정하여 외근순사에게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담당구역 내 주민의 호구조사를 하게” 하여 경찰이 주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sup>118)</sup> 조사항목 역시 일반적인 인구조사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서 예를 들어 1922년 8월 8일 공포된 충청북도의 ‘호구조사규정시행

113)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訓令甲第5號 戶口調査規程』(1916년 1월 24일), 『朝鮮總督府官報』(1916년 1월 24일), pp. 290-294.

114) 다음의 『매일신보』 기사들은 1910년 9월 30일 평양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여 경찰이 검병호구조사를 시행했고, 각 지방의 콜레라가 전식(全熄)되어 동년 10월 9일부터 성내(城內) 헌병대의 검병호구조사를 폐지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檢病的戶口調査』, 『每日申報』, 1910년 10월 6일, 2면; 『檢病的戶口調査廢止』, 『每日申報』, 1910년 11월 11일, 2면.

115) 『群山の 戶口調査』, 『每日申報』, 1912년 3월 16일, 2면.

116) 박운재(2004), pp. 230-236; 신규환(2012), p. 459.

117) 박명규, 서호철(2003), 『식민권력과 통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 69.

118) 이 규정은 1922년 호구조사규정을 개정하면서 3개월에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朝鮮總督府訓令第33號 戶口調査規程』(1922년 7월 13일), 『朝鮮總督府官報』(1922년 7월 13일), p. 188.

세칙’을 보면 “1. 자산, 소득, 업무 상황 2. 性行, 사상, 당파 및 경력 3. 가정 및 社交 상황 4. 표창해야 할 篤行者 및 구조해야 할 困窮者 5. 전염병, 기타 주의해야 할 질환자 6. 기타 경찰상 주의해야 할 사항” 등으로 사실상 개인 사찰에 해당하는 항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sup>119)</sup> 이러한 촘촘한 법적 그물망 속에서 감염병 유행이 확인되면 경찰과 헌병은 전염병예방령과 그 하위법들을 근거로 식민피배자인 한국인의 일상에 침입해 들어왔고 거꾸로 식민지배자들에 대한 한국인의 저항감은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sup>120)</sup>

### 3.2. 1918년 독감 유행과 조선총독부 방역정책의 실태

1918년 9월경 식민지조선에서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고 이내 상황이 심각해지자 각 경찰서들은 관내 독감 환자와 사망자를 파악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경성의 경우 각 경찰서 위생계가 가장 바빴는데 이는 “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라고 야단들인” 독감으로 인해 관내 기관, 회사, 공장 등 도처에서 “감기에 걸렸다는 사람 수효의 보고가 연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본정경찰서와 종로경찰서는 “관내 각 순사파출소에 명령하고 감기 앓는 증세와 그 상황, 기타 사망자의 유무를 들어 보고하라”고 하였다.<sup>121)</sup> 신문 기사만으로는 그 전모를 세세히 알 수 없으나 전국의 경찰서와 헌병분대들이 직접 신고들을 접수하는 한편, 추가로 검병 호구조사를 시행하여 관내 환자수와 사망자수를 집계 후 그 결과를 각

119) 『朝鮮總督府忠清北道訓令乙第16號 戶口調査規程施行細則』, (1922년 8월 8일), 『朝鮮總督府官報』(1922년 8월 7일), p. 188.

120) 경성부 종로경찰서는 “러시아와 중국 각 방면으로부터 비밀히 침입하는 조선독립음모단”을 색출해 내기 위해 종로관내에 임시호구조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는 평소 호구조사가 그만큼 강압적인 행태를 띠고 시행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戶口調査로 陰謀團 侵入을 防止』, 『每日申報』, 1921년 1월 13일, 3면.

121) 『毒感에 困若한 衛生系』, 『每日申報』, 1918년 10월 23일, 3면.

도 경무부장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짐작된다.<sup>122)</sup> 그러나 독감은 일제가 전염병예방법령 제1조에서 규정한 법정감염병인 콜레라, 홍역,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두창, 발진티푸스, 성홍열, 디프테리아, 페스트 등 9종에 속하지 않는 감염병이었다. 따라서 “법규상에 정한 전염병과는 달라서 총환자수, 기타의 확실한 통계를 하는 조사방법이 없”었으며,<sup>123)</sup> 전염병예방법령 제4조에 의거하여 경찰에 신고할 필요도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듬해인 1919년 봄의 3차 만연 때에도 지속되어 『매일신보』는 “경성 시내에는 그 무서운 독감이 또 다시 유행하려는 기미가 있으므로 본정경찰서의 위생계에서는 관내에 검병적 호구조사를 시작하였는데 괴질이나 흑사병 같이 법령으로써 예방하는 규칙 이외인 고로 강제적의 조사는 물론이요 예방의 방법도 조처할 규례가 없어 처사에 매우 불편하나 작년과 같이 사람이 많이 죽어서는 규정 이외라고 주저할 일이 못 되는 고로 위험한 모양으로 인정하면 각종의 예방 방법을 실행하게 되리라”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sup>124)</sup> 이러한 점은 같은 시기의 일본 본국 또한 마찬가지여서 『매일신보』는 도쿄에서 온 전보 내용을 소개하며 당시 일본의 상황을 “이 병은 굉장한 세력으로 유행을 하는 것이나 감기라는 이름을 가져 전염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도 없는 터이므로 달리 칙령으로도 집회와 기타 중요한 사항을 절대로 금지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전하였다.<sup>125)</sup>

이상의 난맥상은 실제로 페스트 같은 법정감염병이 유행했을 때 경무총감부가 보인 신속한 방역 행태와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곤란할 정도이다. 1918년 독감과 같은 해에 중국에서 유행했던 폐페스트의 예를 들어

122) 『各地毒感』, 『毎日申報』, 1918년 11월 9일, 3면.

123) 『毎日申報』, 1918년 11월 18일, 3면.

124) 『毎日申報』, 1919년 2월 10일, 3면. 인용문에서 ‘괴질’은 콜레라를, ‘흑사병’은 페스트를 가리킨다.

125) 『毎日申報』, 1919년 2월 5일, 3면.

보자. 1918년 1월 8일, 중국 산서성(山西省)에서 폐페스트가 발생할 조짐을 보인다는 소식이 식민지조선에 처음으로 알려졌다.<sup>126)</sup> 그로부터 약 1개월 뒤인 1918년 2월 13일에 이르러 평안북도 경무부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벌써 페스트 예방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sup>127)</sup> 페스트가 산서성에서 산둥성(山東省)으로 확산되어 2월 27일 산둥성 청도민정부(靑島民政部)가 의사 폐페스트 환자 5명의 발생을 통전(通電)하자 경무총감부는 27일 당일 곧장 각 도 경무부장에게 미리 세워놓은 방역 대비책을 통첩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이에는 전염병예방령 제14조에 따른 모든 조치, 즉 검역위원을 배치하고 선박, 기차, 여객을 검역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었다.<sup>128)</sup> 3월 1일에는 조선총독부고시 제38호가 정식으로 공포되어 “페스트 예방을 위하여 전염병예방령 제14조에 의해 남만주철도 안봉선(安奉線)으로 들어오는 기차에 대하여 대정 7년 3월 1일부터 신의주 정차장에서 검역을” 시작하였다.<sup>129)</sup> 같은 3월 1일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고시 제1호가 공포되어 “평안북도 경무부에 검역위원본부를 설치하고 같은 도 신의주경찰서에 검역위원지부를 설치하였다.”<sup>130)</sup> 역시 같은 3월 1일 인천항은 “산둥성의 청도지부(靑島芝罘)의 항로를 거쳐 다수의 중국 정크선의 입항이 많”으므로 중국에서 오는 선박에 대해 엄밀한 검역을 시행하기로 하였다.<sup>131)</sup> 3월 30일 북경에서 온

126) 『支那電報: 黑死病과 外交團』, 『每日申報』, 1918년 1월 8일, 2면.

127) 『黑死病豫防, 평북 경무부에서』, 『每日申報』, 1918년 2월 13일, 3면.

128) 『每日申報』, 1918년 3월 1일, 2면; 『支那의 黑死病과 當局의 防疫』, 『每日申報』, 1918년 3월 2일, 3면.

129) 『朝鮮總督府告示第38號』(1918년 3월 1일), 『朝鮮總督府官報』(1918년 3월 1일), p. 1.

130)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告示第1號』(1918년 3월 1일), 『朝鮮總督府官報』(1918년 3월 1일), p. 2.

131) 『支那鼠疫과 仁川の 防疫, 크게 경계하여야 한다』, 『每日申報』, 1918년 3월 3일, 3면.

전보를 통해 제남(濟南)과 남경(南京)의 페페스트가 방역으로 거의 종식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sup>132)</sup> 경무총감부는 4월 11일부터 경남, 평남, 평북, 전남의 해항검역을 부분적으로 폐지하고 기차검역도 곧 폐지하기로 하였다.<sup>133)</sup>

이러한 흐름은 병합 직후 만주에서 유행했던 페페스트에 대처하면서 경무총감부를 중심으로 한 무단적 방역 체계가 식민지조선에서 나름 자리를 잡아간 결과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1918년 독감 유행 시기에는 이와 같은 체계적인 대응의 면모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앞서 『매일신보』의 보도 추이대로 독감이 남만주철도 지선인 안봉선과 연결된 경의선을 따라 만주에서 신의주를 거쳐 경성,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다는 정황을 포착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무총감부가 페스트 방역 때와 달리 신의주 역에 방역을 위한 검역 조치를 취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해항검역 역시 마찬가지였다. 『매일신보』의 언급처럼 독감이 “감기라는 이름을 가져” 범망을 벗어나 있는 감염병인 까닭에 전염병에 방령이든 그 하위법이든 당장 적용하여 조치를 취할 마땅한 법적 수단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시가 북진대륙정책을 우선시한 무단정치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무총감부의 이러한 무대책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 독감 유행이 한창이던 1918년 10월 26일 『매일신보』가 “남아메리카연방 각都會에서는 죽는 자가 매일 수천 명에 이르러 전국이 멸망할 지경”이라면서 독감으로 인한 세계 멸망의 조짐까지 기사화<sup>134)</sup>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결과적으로, 1918년 독감 범유행을 가리켜 “고급 미증유의 참상”<sup>135)</sup>이라고 말한 경무총감부가 일선 경

132) 『肺黑死病終熄』, 『每日申報』, 1918년 3월 30일, 2면.

133) 『海港停留廢止』, 『每日申報』, 1918년 4월 5일, 2면.

134) 『南米聯邦의 各都會는 毒感으로 滅亡될 地境』, 『每日申報』, 1918년 10월 26일, 3면.

135) 『警務彙報』, 1920년 3월호, p. 10.

찰서와 헌병분대 등을 동원하여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곤 그들 스스로 환자 조기발견에 가장 유효하다고 인정한 호구조사에 집중하면서 독감으로 인한 이환자수와 사망자수를 집계하는 것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선 경찰이나 헌병 역시 “기막히게 많은 독감의 환자수”<sup>136)</sup>로 인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매일신보』 10월 31일자 기사에 따르면 종로경찰서가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내에 한하여 독감 환자를 집계한 결과, “내지인 환자는 대략 2,600명이고 조선인 환자는 24,000명의 놀라울 수효에 달한 바 합계가 26,600명이고 이 중에 사망자는 내지인 10명이 죽고 조선인은 138인이 죽었”을 정도였기 때문이다.<sup>137)</sup>

경무총감부는 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부터 독감 유행 전체인 1917년까지 계속 사무분장규정을 개정하고 그 사이 위생 및 방역과 관련한 법규들의 입안을 주도해 나가는 방식으로 조직의 몸집을 불림과 동시에 고압적인 헌병경찰의 무력을 앞세워 의식주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한국인들의 일상 전체를 통제하는 거대 권력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위생 및 방역에 관한 한 경무총감부와 헌병경찰의 위세는 전문기관인 병원이나 전문직인 의사보다 높아 오히려 이들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sup>138)</sup> 그러나 이러한 권세는 1918년 전 세계를 휩쓸다시피 한 신종 독감의 출현으로 인해 빠르게 무력화되었다. “경성에서도 매일 15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화장장이 부족해지자 어쩔 수 없이 노천에서 화장하는 상황”<sup>139)</sup>에 이르렀을 만큼 독감 창궐로 인한 죽음이 일상화된 한국인들에게 이전부터 일상적인 폭력의 주체였던 헌병경찰의 무능한 대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를 자아내게 했을 여지가 충분하다. 이는

136) 『鐘路管内만 二萬六千, 기막히게 많은 독감의 환자수』, 『每日申報』, 1918년 10월 31일, 3면.

137) 『每日申報』, 1918년 10월 31일, 3면. 본 논문 2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실제 환자 및 사망자는 보도된 집계 결과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138) 박윤재(2005), pp. 362-363.

139) 京城府 編(1941), 『京城府史』, 第3卷, p. 704.

한국인의 일상뿐 아니라 죽음과 사후처리까지 관리하고 감독했던 일제 경찰 업무의 특성상 증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독감 사망자의 매장이나 화장을 위해서는 1912년 6월 20일 공포된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규칙’ 제12조에 따라 “경찰서 또는 순사주재소, 헌병파견소, 동 출장소의 인허증(認許證)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sup>140)</sup> 게다가 전염병예방령 제11조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의 시체는 매장이 아닌 화장하는 것이 원칙이었다.<sup>141)</sup> 또한 그 총괄 중앙기구 역시 1910년 10월부터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묘지 및 매·화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해 온 경무총감부 위생과였다.<sup>142)</sup> 조선 성종 대에 국법으로 화장을 금지한 이래 400여 년간 매장이 장례문화의 전부나 마찬가지로 여겨졌던 한국인에게 취체규칙에 따라 화장을 합법화하고, 공동묘지제도를 도입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중묘지나 가족묘지가 아닌 경무총감부가 지정한 공동묘지에만 매장하도록 강제화한 일제의 조치는 한국인들의 광범위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sup>143)</sup> 따라서 취체규칙의 강행<sup>144)</sup> 이후 식민지조선에는 공동묘지 이외의 곳에 암장을 하려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고,<sup>145)</sup> 1918년 독감 유행 시에는 각 경찰서에 화장이 아닌 매장 청원을 하려는 한국인들이 끊이지 않았다.<sup>146)</sup> 결국 1918년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의 격증은 취체규칙에 따른 공동묘지제도와 화장의 시행, 나아가 이와 관련한 헌병경찰

140) 『朝鮮總督府令第123號 墓地, 火葬場, 埋葬及火葬取締規則』(1912년 6월 20일), 『朝鮮總督府官報』(1912년 6월 20일), p. 179.

141) 『警務彙報』, 1915년 6월호, p. 71.

142) 『朝鮮總督府官報』(1910년 10월 1일), p. 24.

14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박태호(2006), 『장례의 역사』, 서해역사문고, 제9권, 파주: 서해문집, pp. 175-189.

144) 1913년 9월 1일 경성부터 취체규칙이 시행되었고 이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朝鮮總督府令第85號 墓地, 火葬場, 埋葬及火葬取締規則施行』(1913년 9월 1일), 『朝鮮總督府官報』(1913년 8월 30일), p. 299.

145) 『墓地規則違反, 공동묘지가 실혀서』, 『每日申報』, 1915년 2월 28일, 3면.

146) 『每日申報』, 1918년 10월 30일, 3면.

및 식민지배권력의 행태에 대한 피지배자들의 반감과 분노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3.3. 3·1 운동 이후의 변화

막강했던 경무총감부가 갑자기 해체된 직접적인 계기는 민족사적 사건이었던 1919년 3·1 운동에 있었다. 병합 이후 지속된 조선총독부의 무단정치는 3·1 운동으로 한계에 부딪쳤고, 이른바 문화정치가 시작되면서 그간 무단정치를 가능하게 했던 핵심기구인 헌병경찰제도 역시 헌병과 경찰의 제도적 분리를 통해 보통경찰제로 전환하였다. 1919년 8월 20일 경무총감부의 폐지<sup>147)</sup>와 함께 조선총독부 내부 조직으로서 경무국(警務局)이 설치되었다.<sup>148)</sup> 지방관제도 개정하여 각 도 경무부가 폐지되면서 지방단체장인 도지사에게 경찰권을 주고 그 아래 제3부(1921년 2월부터 경찰부로 개칭)를 두어 지사가 제3부장을 지휘 감독하게 하였다.<sup>149)</sup> 위생 관련 업무 역시 경무국의 하위 부서인 위생과에서 이전보다 대폭 축소된 형태로 담당하게 되었으며,<sup>150)</sup> 경무총장의 권한이었던 ‘전염병예방령시행규칙’과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규칙’ 등에 대한 명령도 전부 조선총독을 통해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형태로 바뀌었다.<sup>151)</sup> 즉, 경무총감부가 폐지되면서 위생 및 방역과 관련한 시행 주체가

147) 『朝鮮總督府令第132號』(1919년 8월 20일), 『朝鮮總督府官報 號外』(1919년 8월 20일), p. 1.

148) 『朝鮮總督府訓令第30號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中通改正』(1919년 8월 20일), 『朝鮮總督府官報 號外』(1919년 8월 20일), p. 2.

149) 조성택(2015), 「일제 강점기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韓國行政史學誌』 37, 한국행정사학회, p. 94.

150) 『朝鮮總督府官報 號外』(1919년 8월 20일), p. 2.

151) 『朝鮮總督府令第133號』(1919년 8월 20일), 『朝鮮總督府官報 號外』(1919년 8월 20일), p. 1; 『朝鮮總督府令第143號 傳染病豫防令施行規則中通改正』(1919년 9월 11일), 『朝鮮總督府官報』(1919년 9월 11일), p. 122; 『朝鮮總督府令第152號 墓

각 도 경무부장에서 도지사로 바뀌었고, 그 결과 지방행정조직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그만큼 경찰의 강제성이 약화되는 효과를 가져왔다.<sup>152)</sup> 1920년 4월부터는 무단정지기 헌병경찰의 무도성을 상징하던 태형령도 폐지되었다.<sup>153)</sup> 하지만 관련 업무가 대폭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위생 및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기구는 여전히 명칭만 경무국으로 바꾼 경찰조직이었고, 그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 인력 역시 여전히 경찰이었다.<sup>154)</sup> 한국인 위에 군림하던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 또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sup>155)</sup>

그러나 1919년 11월 초순 독감이 다시 유행하여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을 때 경무국과 각 지방관서들은 3·1 운동의 여파로 이전과 같은 강압적인 형태의 방역 활동을 시행할 수 없었다. 게다가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당시 상황에서 “말만 들어도 몸서리가 치는”<sup>156)</sup> 독감의 원인은 이듬해인 1920년 여름에 접어들어서도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sup>157)</sup> 따라서 다른 감염병과 달리 “예방법이 불완전하므로 의사들도 완전한 치료를 못하고 다만 대응요법만 사용”<sup>158)</sup>하는 독감의 재유행으로

地, 火葬場, 埋葬及火葬取締規則中通改正.」(1919년 9월 30일), 『朝鮮總督府官報』(1919년 9월 30일), p. 343.

152) 박윤재(2004), pp. 242-244.

153) 『制令第5號 朝鮮答刑令廢止』(1920년 3월 31일), 『朝鮮總督府官報』(1920년 3월 31일), p. 393.

154) 1919년 12월 23일자 『매일신보』 기사를 보면 “유행성 감모 예방법에 대하여는 당국에서 그 동안 종종 고심한 결과 요사이 경기도 제3부와 경무국과의 협의로 좌기(左記)의 고안을 하여 근일 발표할 터인데...”라 적고 있어 지방관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총독부 경무국과 각 도 제3부의 위생 및 방역 업무와 관련한 수직적 공조 관계는 이전 시기 경무총감부와 각 도 경무부의 그것과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었던 듯하다. 『惡感豫防法發布?』 『每日申報』, 1919년 12월 23일, 3면.

155) 조경달(2013), pp. 80-81.

156) 『每日申報』, 1919년 10월 9일, 3면.

157) 『아직도 判明치 안은 惡感冒의 病原體』, 『每日申報』, 1920년 7월 25일, 3면.

158) 『元山에도 惡感이 流行』, 『每日申報』, 1919년 12월 14일, 3면.

인해 경찰이 우선 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 개인위생에 주의하라는 당부와 고지뿐이었다. 이에 따라 1919년 11월 24일 경무국 위생과장은 각 도지사에게 통첩과 주의서(注意書)를 발송하였다.<sup>159)</sup>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명의로 발송된 이 통첩에는 독감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지침이 기재되었으며, “다른 보통 전염병과 달리 병의 성질상 公力으로써 예방조치를 하는 범위가 적으므로 … 일반민중의 自衛를 환기시켜” 독감의 유행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sup>160)</sup> 일선 경찰서에서도 개인위생 주의사항을 기재한 예방 주의서를 각 파출소에 게시케 하였는데 경무국 위생과가 발송한 이 통첩과 주의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sup>161)</sup> 12월 들어 상황 악화로 경성에서도 매일 백 이십여 명의 사망자가 나오자 경무국 위생과는 수차 예방책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12월 19일 총독부에서 각 도지사에게 다시 예방에 관한 통첩을 발송하였다.<sup>162)</sup> 12월 23일에는 경기도 제3부가 경무국과 협의하여 “주의서 삼십만 매를 인쇄하여 각 호에 한 장씩 반포”하고, “그림을 그린 광고와 같은 주의서를 인쇄하여 요리집과 기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걸어”두고, 경성 각 여학교에 부착하여 마스크를 만들어 일반 청구자에게 실비로 분배하고, 그다지 큰 효험은 없으나 예방주사를 청구자에게 실비로 주사해 줄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sup>163)</sup> 경기도나 충청남도 등 지방관서는 도지사 명의로 유고(諭告) 또는 훈령을 공포하여 독감예방을 위한 개인의 주의사항과 행동방침을 시달하였다.<sup>164)</sup> 경기도지사의 유고는 12월 27일 『매일신보』에 특별히

159) 「惡感을 豫防하고자 各道知事에게 通牒」, 『每日申報』, 1919년 11월 26일, 3면.

160) 「官通牒第130號 流行性感冒豫防ノ件」(1919년 11월 25일), 『朝鮮總督府官報』(1919년 11월 25일), pp. 302-303.

161) 「惡感豫防注意書, 본당서에서 게시했다」, 『每日申報』, 1919년 12월 14일, 3면.

162) 「惡感豫防 通牒을 각 도지사에게 발송」, 『每日申報』, 1919년 12월 21일, 3면.

163) 『每日申報』, 1919년 12월 23일, 3면.

164) 「朝鮮總督府京畿道諭告第3號 流行性感冒豫防心得」(1919년 12월 25일), 『朝鮮總督府官報』(1919년 12월 27일), p. 426; 「朝鮮總督府忠清南道訓令第4號」(1920년

전문이 보도되었고,<sup>165)</sup> 1920년 1월 3일에는 경기도청이 한글로 인쇄한 유고를 경성 안팎으로 한 장씩 배포하였다.<sup>166)</sup>

이상과 같은 경무국과 지방관서의 행적으로 미루어 한국인들에게 접근하는 식민권력의 방식이 3·1 운동의 여파로 한결 부드러워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독감 이환자수와 사망자수를 집계하기 위한 경찰의 검병호구조사는 계속되었다. 다만 경성의 경우 이전과 같은 헌병경찰의 강압적 방식이 아니라 경찰서 전속의사 1인, 간호부 1인, 순사 1인, 인부 1인으로 구성된 구호반을 조직하여 호별 방문을 하고 환자 발견시 즉시 치료해 주는 방식이 추가되었다.<sup>167)</sup> 경성의 구호반 활동이 한국인들에게도 점차 호응을 얻어 효과를 보자 경무국 위생과는 구호반 일부를 지방 도시에 파견하는 계획까지 세웠다.<sup>168)</sup> 그러나 일제 스스로도 독감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치도 않았고 또 지정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쯤 지장이 있어서 생각한 대로 하지 못하고 그 계획한 바를 저버려 두어서 드디어 이 참해를 당케 함은 실로 유감”<sup>169)</sup>이라고 인정하였듯이 그들은 발병 원인을 알아낼 방법도,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막을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실제로도 일제는 1924년 6월 전염병예방법령을 개정했으나 법정감염병으로는 기존 9종 이외에 유행성뇌척수막염 단 1종을 추가했을 뿐이고 독감은 빠져 있었다.<sup>170)</sup> 반면 검병호구조사가 부각된 독감 방역의 경

1월 24일), 『朝鮮總督府官報』(1920년 1월 30일), p. 312.

165) 『京畿道와 流行感冒豫防』, 『每日申報』, 1919년 12월 27일, 2면.

166) 『京畿道廳에서 惡感豫防書配布』, 『每日申報』, 1920년 1월 5일, 3면.

167) 『惡性感冒의 救護班이 조직되었다』, 『每日申報』, 1919년 12월 27일, 3면; 『二萬六千名의 患者를 斃인 昨年末以來의 惡感』, 『每日申報』, 1920년 1월 20일, 3면. 『매일신보』가 ‘전속의사’로 표현한 의사들은 경무국이 초빙한 임시의사였으며, 구호반은 총 5개조로 편성하여 각 경찰서에 배속하였다. 『警務彙報』, 1920년 3월 호, p. 18 참조.

168) 『每日申報』, 1920년 1월 20일, 3면; 『惡感流行地에 救護班派遣』, 『每日申報』, 1920년 1월 21일, 3면.

169) 『每日申報』, 1920년 1월 20일, 3면.

힘만큼은 이후 1919-1920년 유행한 콜레라 방역 및 1920년-1921년 유행한 페스트 방역에 반영됨으로써 경찰의 호구조사를 일제의 주요한 방역책으로 자리잡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sup>171)</sup>

물론 손쓸 사이도 없이 급속히 전 세계에 퍼져 수많은 희생자를 낸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역병 중 하나를 상대해야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제의 무능만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식민피지배자들을 대하는 지배자들의 오만함이었다. 예를 들면 독감이 한창 유행이던 1918년 11월 3일 『매일신보』는 경무총감부 위생과 기사 세가와 헤이조(瀨川 平造)의 발언을 빌려 독감으로 특히 한국인이 많이 죽는 이유가 무모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한국인들의 치료방법에 있다면서 한국인의 무지만 탓하였다.<sup>172)</sup> 이러한 일방적인 비난은 3·1 운동을 거친 1919년 12월에 이르러선 그 논조가 누그러져 독감 재유행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죽는 이유를 “영양도 부족하고 모든 생활이 위생을 허락지 아니하는 비참한 우리의 생활”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173)</sup> 그럼에도 근대 식민주의는 “새로운 지배자가 종속된 사회를 문화적으로 배려하지 않았다”<sup>174)</sup>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까닭에 식민지 한국인들의 불만은 단시간에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3·1 운동은 이러한 점에서 병합 이후 헌병경찰을 앞세운 일제 무단정치 10년에 대한 피지배자들의 반발감과 분노가

170) 『制令第3號 傳染病豫防令中通改正』(1924년 6월 2일), 『朝鮮總督府官報』(1924년 6월 2일), p. 1.

171) 신규환(2012)은 1920-1921년 페스트 방역시 호구검역이 강조된 것을 이보다 앞서 호구검역의 중요성이 부각된 1919-1920년 콜레라 방역의 경험 때문으로 보는데, 콜레라 방역 시 호구검역이 강조된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1918년 독감 방역의 경험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신규환(2012), p. 462, pp. 469-471 참조.

172) 『朝鮮人에 死亡者가 많은 리유는 치료를 잘 못하느 까닭이다』, 『每日申報』, 1918년 11월 3일, 3면.

173) 『惡感 朝鮮人만 襲擊』, 『每日申報』, 1919년 12월 23일, 3면.

174) 위르겐 오스터함멜(2003), 박은영, 이유재 공역, 『식민주의』, 서울: 역사비평사, 2006, p. 32.

일거에 폭발한 결과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에는 위생과 방역을 명분으로 특히 지방 농민들에게 “구타와 모욕”<sup>175)</sup>을 동반한 강압적인 청결검사와 검병호구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심지어 매장까지 간섭함으로써 의식주와 죽음 등 한국인의 일상 전체를 지배했던 무서운 헌병경찰에 대한 피해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식민지 한국인의 뇌리에 위생과 청결이란 어느새 식민권력의 폭력과 동질의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조선총독부 일본인 관리 중에도 “조선인은 위생사상이 유치하므로 그 불결한 것을 관변에서 간섭하였더니 그것에 반감을 많이 가졌었다. 그리하여 그 반감이 삼일운동의 중대한 한 원인이었었다”<sup>176)</sup>는 평가를 하는 이가 나올 정도가 되었다.

#### 4. 나오는 말

무단정치기의 막바지였던 1918년 9월부터 1919년 1월까지 5개월 동안 식민지조선에서만 전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 이환되어 이 가운데 14만여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1918년 독감 범유행이 이후 한국 역사에 끼친 영향은 아직 충분히 연구되고 검토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앞서 1장 들어가는 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1918년 독감은 식민지조선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경무총감부 및 헌병경찰의 해체까지 초래한 1919년 3·1 운동의 한 도화선이 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1918년의 식민지조선은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인한 물가 등귀와 쌀값 폭등, 이어진 기근에 의한 민생 도탄과 그 결과인 전국 단위의 소요와 파업, 그리고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신중

175) 『朝鮮人과 衛生, 惡宣傳의 一例』, 『東亞日報』, 1927년 2월 1일, 1면.

176) 『東亞日報』, 1927년 2월 1일, 1면.

독감 창궐로 인한 수많은 사망자까지 발생함으로써 한계 상황을 넘어선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sup>177)</sup> 헌병경찰을 앞세운 기존의 무단적 대처로 1918년 독감 방역에 실패한 경무총감부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이제 도처에서 죽음의 일상화를 목격하게 된 식민지조선의 한국인들은 절망감을 넘어 분노까지 느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쌀값 폭등과 기근, 그리고 이어진 인류사적 역병 1918년 독감의 창궐과 총독부의 무능한 대처가 맞물리면서 식민지조선에는 우연히도 인류 멸망의 환난을 현실화한 것 같은 종말론적 무대가 제공되었다. 따라서 1918년 독감 유행이 가라앉자 곧 터진 3·1 운동에서 구시대의 종말과 현세적 유토피아의 도래를 동시에 읽어내려는 후대의 시도가 있음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할 수 있다.<sup>178)</sup> 본 논문 역시 제1차 세계대전과 1918년 독감이라는 시대적 배경에 초점을 맞춘 결과 역사적 우연성이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3·1 운동이 가지는 민족사적 의미와 자발적 역동성이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한국인들이 의식적으로 식민통치의 무단성에 맞서 전국적인 저항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역사의 흐름이 늘 그러하듯이 1910년대 식민지조선에서도 식민지배자들과 피지배자들 간의 복잡한 상호 반응이 이루어졌고 1918년 독감 범유행은 이에 유의미한 작용을 하였다.

---

177) 이정은(1990).

178) 권보드래(2015), 「‘만세’의 유토피아: 3·1 운동에 있어 복국(復國)과 신세계」, 『한국학연구』 3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참고문헌

### 【자 료】

『東亞日報』.

『每日申報』.

『서울신문』.

『중앙일보』.

『中外日報』.

『警務彙報』.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施政年報』.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朝鮮彙報』.

京城府 編(1941), 『京城府史』, 第3卷.

內閣官報局(1910), 『法令全書, 明治43年』.

국가기록원 관보(<http://theme.archives.go.kr/next/gazette/viewMain.do>).

조선총독부관보활용시스템(<http://gb.nl.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BIG KINDS 뉴스라이브러리(<http://www.bigkinds.or.kr/mediagaon/goNewsKeyword.do>).

### 【논 저】

권보드래(2015), 「‘만세’의 유토피아: 3·1 운동에 있어 복국(復國)과 신세계」,  
『한국학연구』 3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2003), 『한국사: 일제의 무단통치와 3·1 운동』 제47권, 서울:  
탐구당, 2013.

김서형(2011a), 「1918년 인플루엔자와 여성: 새로운 권력주체와 권력관계의 재  
구성」, 『미국사연구』 33, 한국미국사학회.

\_\_\_\_\_ (2011b), 「1918년 인플루엔자와 미국사회: 전쟁, 공중보건 그리고 권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서형(2010a), 「생체권력(Bio-Power)과 1918년 인플루엔자」, 『美國學論集』

- 42(2), 한국아메리카학회.
- \_\_\_\_\_(2010b), 「공중보건국(USPHS)과 1918년 인플루엔자」, 『미국사연구』 31, 한국미국사학회.
- 김영수(2015), 「일본의 방역경험 축적을 통해 본 조선총독부의 방역사업: 1911년 페스트 유행 대응을 중심으로」, 『翰林日本學』 26,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대한감염학회(2014), 『감염학』, 개정판, 서울: 군자출판사.
- \_\_\_\_\_(2009), 『韓國傳染病史』, 서울: 군자출판사.
- 박명규, 서호철(2003), 『식민권력과 통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상표(2007), 「21세기 조류독감 대재앙은 기우일까, 현실일까? - 『매일신보』를 통해 본 1918년 식민지조선의 ‘돌림고삐’ 유행」, 『인물과 사상』 108, 인물과사상사.
- 박윤재(2005),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서울: 해안.
- \_\_\_\_\_(2004), 「한말 일제 초 방역법규의 반포와 방역체계의 형성」, 『한국 근대의학의 탄생과 국가』(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편), 서울: 역사공간, 2016.
- 박태호(2006), 『장례의 역사』, 서해역사문고, 제9권, 파주: 서해문집.
- 백선례(2011), 「1919·20년 식민지 조선의 콜레라 방역활동 - 방역당국과 조선인의 대응을 중심으로」, 『史學研究』 101, 한국사학회.
- 서희원(2014), 「1918년 인플루엔자의 대재앙과 문학」, 『한국문학연구』 47,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 신규환(2012), 「제1·2차 만주 페페스트의 유행과 일제의 방역정책(1910-1921)」, 『의사학』 21(3), 대한의사학회.
- 이군호(2004), 「일본의 중국 및 만주침략과 남만주철도: 만주사변(1931)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평화연구』 12(1),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 이만열(2011), 「스코필드의 의료(교육)·사회선교와 3·1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57, 한국근현대사학회.
- 이상원(2009), 「우리나라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예측 모델링 및 1918년 대유행에 대한 적용과 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연(2013), 『일제강점기 조선언론 통제사』, 서울: 박영사.
- 이정은(1990), 「《매일신보》에 나타난 3·1 운동 직전의 사회상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이형식(2012), 「1910년대 식민지제국일본의 전염병 방역대책: 조선전염병예방

- 령을 중심으로』, 『日本學報』 92, 한국일본학회.
- 전상숙(2012), 『조선총독정치연구』, 파주: 지식산업사.
- 전중휘(1975), 『韓國急性傳染病概觀』, 개정3판, 서울: 최신의학사.
- 정근식(2011), 「식민지 위생경찰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유산」, 『사회와 역사』 90, 한국사회사학회.
- 조성택(2015), 「일제 강점기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韓國行政史學誌』 37, 한국행정사학회.
- 천명선, 양일석(2007), 「1918년 한국 내 인플루엔자 유행의 양상과 연구 현황: 스코필드 박사의 논문을 중심으로」, 『의사학』 16(2), 대한의사학회.
- 최혜주(2010), 『근대 재조선 일본인의 한국사 왜곡과 식민통치론』, 서울: 경인문화사.
- 허수열(2011),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 파주: 한길사.
- 황상익(2015), 「보건의료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식민지 근대화론의 허와 실」, 『역사가 의학을 만났을 때』, 서울: 푸른역사.
- 슈테판 카우프만(2008), 최강석 역, 『전염병의 위협, 두려워만 할 일인가』, 서울: 길, 2012.
- 야마베 겐타로(1971), 최혜주 역, 『일본의 식민지조선통치 해부』, 서울: 어문학사, 2011.
- 엘프리드 W. 크로스비(2003), 김서형 역, 『인류 최대의 재앙, 1918년 인플루엔자』, 파주: 서해문집, 2010.
- 위르겐 오스터함멜(2003), 박은영, 이유재 공역, 『식민주의』, 서울: 역사비평사, 2006.
- 조경달(2013), 최혜주 역, 『식민지조선과 일본』,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2015.
- Barry, John M. (2005), *The Great Influenza: the story of the deadliest pandemic in history*, London: Penguin Books.
- \_\_\_\_\_ (2004), “The site of origin of the 1918 influenza pandemic and its public health implications,” *Journal of Translational Medicine* 2(3).
- Dawood, Fatimah S. *et al.* (2012), “Estimated global mortality associated with the first 12 months of 2009 pandemic influenza A H1N1 virus circulation: a modelling study”, *The Lancet Infectious Diseases* 12(9).
- Hsieh, Yu-Chia *et al.* (2006), “Influenza pandemics: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the Formosan Medical Association* 105(1).
- Johnson, Niall P.A.S. & Mueller, Juergen (2002), “Updating the accounts: global

- mortality of the 1918-1920 'Spanish' influenza pandemic",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76(1).
- Langford, Christopher (2005), "Did the 1918-19 influenza pandemic originate in Chin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1(3).
- Lim, Chaisung (2011), "The pandemic of the Spanish influenza in colonial Korea," *Korea Journal* 51(4).
- Murray, Christopher J. L. *et al.* (2006), "Estimation of potential global pandemic influenza mortality on the basis of vital registry data from the 1918-20 pandemic: a quantitative analysis", *The Lancet* 368(9554).
- Oxford, J. S. *et al.* (2005), "A hypothesis: the conjugation of soldiers, gas, pigs, ducks, geese and horses in Northern France during the Great War provided the conditions for the emergence of the 'Spanish' influenza pandemic of 1918-1919", *Vaccine* 23(7).
- Patterson, K. David & Pyle, Gerald F. (1991), "The geography and mortality of the 1918 influenza pandemic",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65(1).
- Phillips, Howard & Killingray, David eds. (2003), *The Spanish Influenza Pandemic of 1918-19: New perspectiv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Schofield, Frank W. & Cynn, H. C. (1919), "Pandemic influenza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its etiology",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72(14).
- Smith, Wilson *et al.* (1933), "A virus obtained from influenza patients", *The Lancet* 222(5732). (originally published as volume 2, Issue 5732).
- Taubenberger, Jeffery K. & Morens, David M. (2006), "1918 influenza: the mother of all pandemics",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12(1).
- WHO (2011),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Report of the review committee on the functioning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in relation to Pandemic (H1N1) 2009*, World Health Organization.

원고 접수일: 2016년 12월 31일

심사 완료일: 2017년 1월 23일

게재 확정일: 2017년 2월 2일

Abstract

---

The 1918 Influenza Pandemic and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s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pidemics

Kim, Taek-joong\*

The 1918 influenza pandemic, commonly known as the Spanish flu, was the worst demographic disaster resulting from a single cause in the 20th century. This influenza lasted from the spring of 1918 toward the end of the First World War to the spring of 1919, and spread widely around the world, resulting in at least 20 million deaths, by some estimates up to over 100 million deaths. Epidemiologically, there were three waves during this period. It was around September 1918, which was the second wave period, when the 1918 influenza pandemic first became known in colonial Korea. It is estimated that influenza was imported to the northern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on the South Manchurian Railway. According to official results announc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March 1919, 7,556,693 out of the estimated total population of colonial Korea of 17,057,032 suffered from the influenza pan-

---

\* Assistant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Medicine,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Chair of the Institute for Medical Humanities, Inje University

demic, with 140,527 deaths recorded (at a mortality rate of 0.82%). However, it is likely that the total number of those who contracted the disease and the number of deaths were both greater than the official figures. In 1918,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s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pidemics was based on the military force of the military police centering on the National Police Agency. However, being such a long time for the cause of influenza to be clarified at the time, influenza fell outside the scope of legal regulations and there were no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The National Police Agency was busy counting the numbers of patients and deaths through house inspections carried out by the military police, and they were unable to handle the influenza pandemic effectively. Korean people witnessed deaths every day due to the incompetence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hich failed to prevent influenza, and the peninsula had reached the point where people felt the capacity to express a despair that had accumulated over 10 years under military colonial rule.